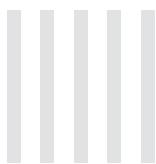


제1절 전근대시대 목포의 수산업

김수희 | (재)독도재단 교육홍보부장

제2절 현대 목포의 수산업

김수희 | (재)독도재단 교육홍보부장



제8장 목포의 수산업 발달사

무안반도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는 목포는 해안의 출입과 굴곡이 많아 각종 수산물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조기, 민어, 갈치, 고등어, 새우 등 온대성 어류가 산란하고 이곳에서 부화된 치어는 발육기를 걸쳐 성어로 성장해 남서해 및 동중국해역으로 흐유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파도가 적고 수면이 고요해 많은 미생물들이 부유하고 있어 굴, 바지락, 낙지 등 양식업에 적당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찍부터 식량 확보를 위한 수산물 채취와 어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약 1천 년경부터 시작된 청동기 시대에서는 고인돌을 비롯한 각종 유적, 유물이 발견되고 있었다. 목포 인근 함평군 내에 발견된 고인돌은 해안 주민들이 농업 및 어업을 하면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업 도구로는 목포 인근 영암군 군서면 동구립리에서 길이가 6.9cm의 대형 낚시의 동(銅)낚시 용 범(鎔范)과 토제 어망추(土製漁網錘)가 함께 발견되었다. 이 동낚시는 주로 뼈나 뿔로 만든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낚시에 비하여 훨씬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해 단시간 내에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동기 시대부터 바다 자원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동낚시로 어획을 하고 있었다.

기원 후 300년경에 해당하는 원삼국시대에는 목포 지방과 동일 어업권에 속한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방처 마을에서는 대형 쇠낚시와 골제 작살과 토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이 조개더미에서는 쇠낚시가 14.3cm에 달하는 극대형 쇠낚시가 출토되어 대형어를 낚아 식생활에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골제 작살과 토제 어망추도 출토되었는데 어망추는 장축(長軸) 중앙에 구멍을 뚫은 관상토추(管狀土錘)의 형태이다.

목포의 수산업은 자연 조건의 영향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수산업이 발달하여 자돌(刺突)어업과 낚시어업,

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⁰¹⁾ 당시 어류 자원은 매우 풍부해 회유 속도가 느린 대형어가 연안 지역으로 회유함에 따라 청동기 시대부터 물고기를 쇠낚시로 잡거나 작살로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촌락이 형성되면서 수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삼국~고려 시대 목포 지방의 어업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제1절 전근대시대 목포의 수산업

1. 조선시대 무안군의 수산업

1) 수산물 종류

조선시대 남서해안의 풍부한 수산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획되었다. 서해안의 대표적 수산물인 조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어민들은 조기떼를 따라 남쪽에서 황해도 연안까지 왕래하면서 어업을 하였다. 이곳에 모여드는 어민들은 조기의 회유 시기, 산란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어획물 처리를 위해 '파시'라는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목포 지방과 그 인근 지역의 수산물 종류를 최초로 기록한 문헌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32)이다. 목포는 무안현(務安縣)에 속해 있었으므로 「무안현조」에 실려 있는 수산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산(土產): 감태(甘苔), 굴(石花), 낙지(落地)

토공(土貢): 상어(沙魚), 수어(水魚), 오징어뼈(烏魚骨)⁰²⁾

『세종실록지리지』 「무안현조」의 수산물 종류는 많지 않지만 감태, 굴, 낙지, 상어, 수어, 오징어뼈가 생산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 서해안에서 대량 어획되었다고 알려진 청어가 어획되지 않았으며 굴, 낙지, 감태가 토산물로 생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수산물 송어는 영산강 하류 부근에서 어전이나 어망으로 어획하였고 상어와 오징어는 낚시어업으로 어획했을 것이다.

1481년(성종 12) 편찬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수정·보완해 1531년(중종 26)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무안현조에는 낙지(落地), 굴(石花), 승어(秀魚), 바지락(黃蛤), 감태(甘苔), 오징어

01)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수협사』, 1996, 1~7쪽

02) 『세종실록지리지』 무안 토산조.

(烏賊魚)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목포 지역 함평현(咸平縣) 토산조(土產條)에는 청각(黃角), 감태(甘苔), 조기(石首魚), 젓새우(白蝦), 민어(民魚), 밴댕이(蘇魚), 승어(秀魚), 낙지(絡締), 굴(石花), 바지락(小蛤), 준치(眞魚), 오징어(烏賊魚)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어 함평현은 무안현에 비해 어업이 발달해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⁰³⁾

따라서 조선 전기 목포 지역에서는 승어, 오징어, 조기, 낙지, 젓새우, 준치, 황각, 감태, 바지락 등이 어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전이나 중선망, 해선망, 낚시, 작살 형태의 어구가 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연간(1725~1776) 각도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각 지방별 수산물을 기록하고 있다. 수산물 종류는 조선 초기 기록과 거의 비슷하지만 수산 가공품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안현: 승어(秀魚), 마른새우(乾大蝦), 오징어(烏賊魚), 수조기(洗鱗石首魚), 굴비(石魚仇乙非), 물고기알(魚卵), 감태(甘苔)

함평현: 마른승어(乾秀魚), 마른새우(乾大蝦), 굴비(洗鱗石魚仇乙非), 마른오징어(乾烏賊魚)⁰⁴⁾

무안현의 수산 가공품은 승어, 오징어, 수조기 등을 어획해 말린 굴비, 마른 승어, 마른 오징어, 마른 새우로 가공하고 있었다. 승어는 영산강에서 어량을 설치해 어획한 것으로 승어알을 어란으로 제조하였다.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무안현읍지』와 『함평현읍지』의 「물산조」에는 승어(秀魚), 어란(魚卵), 오징어(烏賊魚), 농어(鱸魚), 준치(眞魚), 밴댕이(蘇魚), 전어(箭魚), 낙지(絡締), 굴(石花), 콩게(豆蟹), 감태(甘苔)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다.⁰⁵⁾

조선 초기 수산물은 감태, 굴, 낙지, 상어, 승어, 오징어뼈 정도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11종으로 증가하였고 수산 가공품도 제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함평현에서는 감태(甘苔), 조기(石首魚), 민어(民魚), 밴댕이(蘇魚), 승어(秀魚), 낙지(絡締), 굴(石花), 바지락(小蛤), 준치(眞魚), 오징어(烏賊魚), 농어(鱸魚), 청어(青魚), 홍어(洪魚), 잉어(鯉魚), 금잉어(金鯉魚), 빙어(氷魚)가 생산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서해안을 대표했던 청어, 농어, 홍어, 민어, 밴댕이, 승어가 건조품으로 제조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이렇게 목포의 수산업은 조선 초기부터 갯벌에서 채취하는 자연 채취업과 낚시, 작살, 어전어업이 이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조기, 농어, 홍어를 어획하는 어선어업으로 확대 발달했다. 또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량 생산된 수산물은 수산 가공품으로 제조되어 유통되었고, 어선어업이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은 원거리 유통되었다.

03)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안 토산조.

04) 『여지도서』 무안, 함평 토산조.

05) 『무안현읍지』 무안 토산조.

표 1 조선 시대 전라도 무안현·함평현에서 어획된 수산물

무안현	함평현	비고
『세종실록지리지』 감태, 굴, 낙지, 상어, 수어, 오징어뼈	상어, 오징어뼈	오징어뼈
『신증동국여지승람』 낙지, 굴, 송어, 바지락, 감태, 오징어	청각, 감태, 조기, 젓새우, 민어, 뱃댕이, 송어, 낙지, 굴, 바지락, 준치, 오징어	낙지, 굴, 바지락, 감태, 오징어
『여지도서』 (1725~1776) 수조기, 굴비, 어란(魚卵), 감태	마른송어, 마른새우, 굴비, 마른오징어	굴비, 마른오징어
『읍지』(1871) 송어, 어란, 오징어, 농어, 진어, 뱃댕이, 전어, 낙지, 굴, 콩게, 감태 마른송어, 수조기, 송어란, 굴비, 조기알젓	감태, 조기, 민어, 반당어, 송어, 낙지, 굴, 바지락, 준치, 오징어, 농어, 청어, 흉어, 잉어, 금잉어, 빙어, 마른송어, 마른새우, 수조기, 마른조기, 마른오징어	

2) 어업 기술

서남해안은 어장에 어구를 고정하고 부설하는 어량(漁梁)이나 어전(漁箭)과 어선 양현(兩舷)에 어구를 달고 새우와 조기를 잡는 해선망, 중선어업이 발달하였다.⁰⁶⁾

1447년(세종 29)에는 “고기를 잡는 데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혹은 어량을 설치하고 혹은 어망을 사용하고 혹은 배를 저어 바다에 들어가서 흐름을 죽여 낚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⁰⁷⁾ 조선 그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는 영광군 서쪽 파시평(波市坪)에서 나오 봄과 여름에 여러 곳의 고깃배가 모두 이 곳에 모여 그물을 잡는데 관에서 세금을 거두어 나라 비용에 쓴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⁰⁸⁾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물 사용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많이 이용된 어업을 어전 어업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장소에 돌과 대나무를 설치하고 물때에 따라 이동하는 어류를 잡는 어로 방법이다. 당시 어전은 바다에서 육지로 향해 방사형 또는 완형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주를 세운 다음, 여기에 짜리, 나뭇가지, 갈대 등을 엮은 발을 결착시키고 양 날개가 맞닿는 중앙부의 한 곳 또는 중앙 및 좌우 양익의 각 1개소에 함정 장치인 임통을 설치한 것이다. 간만의 차가 큰 내만 또는 간석지에 설치하여 만조 시에 내유한 어류가 퇴조할 때 조류를 퇴거하다가 이 발의 양 날개로 차단하여 외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함정 장치에 빠지게 되면 긴 자루가 달린 초망 또는 작살 등을 잡아 올리는 방법이었

06) 어량은 세종조까지는 어전과 혼용되다가 성종조부터는 어전으로 변하여 그 뒤 어전이란 용어만이 전용된다(박구병, 『한국수산업사』, 태화 출판사, 1966, 107쪽).

07) 박구병, 『한국어업사』, 정음사, 1975, 69쪽.

08) 『세종실록지리지』, 영광군.

다. 조선 전기 어량 또는 어전은 아마도 이러한 모습과 구조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그림 1) 참조).⁰⁹⁾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는 어전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실려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국가는 어전을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각각 밭의 길이에 따라 다시 3등분하였다. 가장 큰 대전(大箭)의 밭길이[簾長]는 500~600파(把, 1파=1.5m, 750~900m), 함정 장치인 임통(柂桶)은 수십이 2장(丈, 1장=3.58m)이다. 중전(中箭)의 밭길이 는 200여 파이고 임통 수십이 1장, 소전(小箭) 은 밭길이가 80여 파이고 임통 수십은 반장(半丈)이다.

어전 중 규모가 가장 큰 대전은 고군산도가 많았고 가장 작은 소소전(小小箭)은 무안, 진 도, 나주, 함평이 많았다. 소소전의 크기는 소 전의 경우 날개의 길이가 120m, 임통 수십이 1.5m였으므로 날개 길이가 40m, 임통 수십 은 50cm정도이다. 무안현과 함평현은 날개 의 길이가 40m 정도의 작은 어전이 설치되고 있었다.¹⁰⁾

또한 조선 후기에는 어전어업보다 적극적인 어법인 주목망(柱木網)과 중선망(中船網), 정선망(定船網) 등이 등장하였다. 주목망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말뚝 및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오는 어류를 포획하는 어구이다. 이 어구는 수심이 깊은 간석지에 말뚝 두 개를 박고 그 사이에 자루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중선망은 반 이동성 어구로 배를 타고 조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도착한 다음 그물을 펼쳐 조기를 잡는 방식이다. 정선망은 기다란 자망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시킨 형태를 취하는 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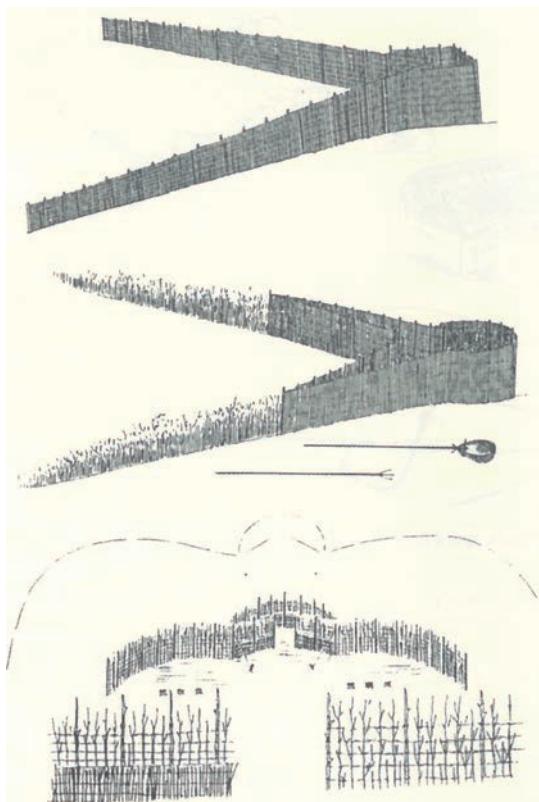


그림 1 어전어업 형태

출전: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 1, 1908.

09) 박구병, 1975, 앞의책, 75쪽.

10) 농상공부수산국(農商工部水產局), 「한국수산지(韓國水產誌)」3, 1910, 150~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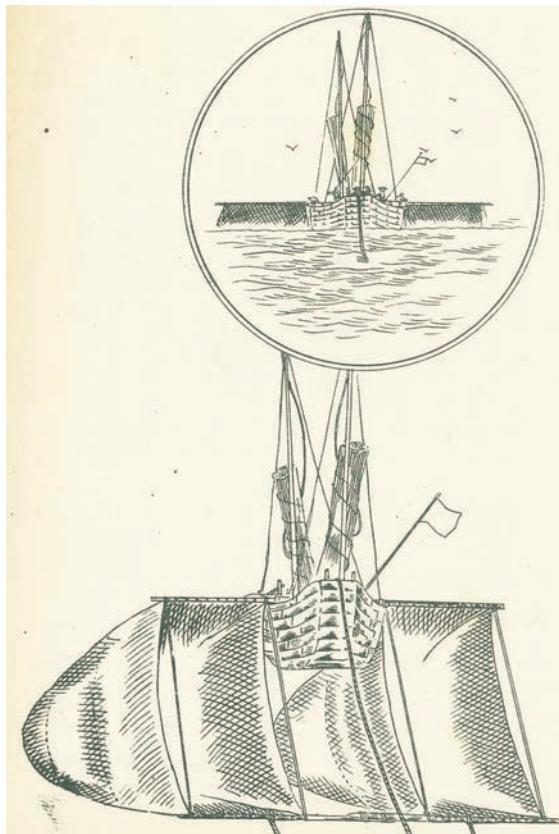


그림 2 중선망 어업

출전: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 1, 1908, 중선 제10도.

과 해선망어업에 관한 설명이 실려 있다. 중선망은 어조망(漁條網)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되어 있고 해선망은 취세하법(取細鰯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서해안에서 사는 어가에서는 배를 타고 나이가 바다에 설망하여 새우를 잡아 소금에 절인다. 그물의 제작 방법은 어조망(漁條網)과 같이 하되 선저에 매어놓는다. 새우는 수면에 떠다니는 고로 설망은 배의 좌우에 정친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위쪽이 굵은 나무로 써 길이가 수십여 파(數十把) 되는 것을 양쪽에 횡으로 배의 머리와 꼬리에 세우고 좌우는 각각 7, 8파가 선외로 나가게 하고 그 좌우에 그물 한 개씩을 매단다. 망구의 상하 가장자리에 각각 긴 나무 한 개를 매다는데 어조망의 제작 방법과 같다. 다만 망목을 몹시 촘촘하게 한다. 다시 경초(徑草, 속명인데 괴초와 같고 금화, 금성 등지의 거친 밭이나 습한 땅에서 난다)로 써 꼬아 두 가닥으로 얹어 노끈을 만들어 베틀에 올라가 장막 모양으

목포 지방에서는 새우를 주로 잡는 해선망, 즉 젓배그물이 발달하였다. ‘중선(中船)’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조기잡이 어선 중선망, 새우잡이 어선 해선망(醢船網)은 자루 모양의 그물 2개를 어선의 양현(兩舷)에 설치하고 조류를 따라 들어오는 어류를 받아 모으는 어업 방식이다(〈그림 2〉 참조).

중선이라는 최초의 명칭은 1748년경으로 『승정원일기』 위도(謂島)에 관한 기록에 “도내에서 고기를 잡는 중선이 입선하는 곳에 큰 어리(漁利)가 있다. 그러므로 어민[船漢輩]은 반드시 누백양전(累百兩錢)을 사사로이 본진(本鎮)의 하리배(下利輩)에게 준 연후에 입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선망어선은 관리에게 거액을 주고, 위도의 중선망은 청어나 조기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었으므로 젓새우 해선망어업도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전어지(佃漁志)」에는 중선망

로 짜서 그물의 밑 부분에 쓴다(그물의 허리 중간 이하는 다같이 이것으로써 가장자리를 이어서 만든다).

조수가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새우가 입망하면 망구(網口)를 합쳐 끌어당겨서 새우를 잡는데 어조망으로 잡는법과 같이 한다. 배에 미리 소금과 항아리나 통이를 실어 놓았다가 새우가 잡히면 바로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근다. 대체로 요즘 나라 안에 넘쳐흐르는 새우젓은 모두 서남해산이다. 이 새우는 해주의 앞바다에서 나는 것이 가장 가늘고 연하며 맛이 좋다.¹¹⁾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선망은 해양에 설망(設網)하여 새우를 잡아 젓갈을 담그는 해선망과 같다고 하였다. 해선망은 새우가 떠다니는 수면에 설치하였고 설치 방법도 조기잡이 중선망과 같다. 그물코가 작고 그물감을 만드는 경초(徑草)는 금화(金化), 금성(金城) 등지에서 난다고 한다. 이 그물감을 장막 모양[幘狀]으로 짜서 망저(網底)를 만들고 어망의 중간부분 이하로 연결하였다. 해선망어선은 소금과 옹기를 배에 싣고 나가 새우를 잡으면 즉시 젓갈로 담갔는데 당시 전국에 넘쳐흐르는 새우는 모두 서남해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새우잡이 해선망은 목포 지역에서 발달하여 개항기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2. 개항기 목포의 수산업

1) 일본인 진출과 안강망어업

조선이 외국에 부여한 최초의 영해 어업권은 1882년 8월 23일 의정(議定)된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조선은 청국 어민에게 황해도·평안도 어장을 개방한다는 것으로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도 자국 어민에게 어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은 일본과 1883년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을 맺어 전라·경상·강원·함경 4도 연안 어장 개방과 어획물 매매를 협력하였다. 이후 일본은 서해안 북부로의 확장할 기회를 노려 제한된 어선 척수이기는 하나 1888년 6월 조선과 「인천해면잠준일본어선포어액한규칙(仁川海面暫准日本漁船捕魚額限規則)」을 맺어 인천 연해 일대의 어업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군용식량 조달을 핑계로 충청·황해·평안 3도 연안 어업권을 획득하였다.

목포는 1883년 일본과 맺은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에 따라 개방하였고 일본은 서남해안 진출을 목적으로 목포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였다. 일본은 일본인 어업 진출을 장려하였고 일본인의 어업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1897년 조선어업협회 지부를 목포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0년 일본 정부는 조선 어

11) 서유구, 「임원십육지」, 「전어지」, 취세하법.

업을 장려하고 일본인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지부를 목포에 설립하였다. 목포는 서해안 일본인 진출의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개발되었다.

오이타현[大分縣] 내무부에서 발간한 『한해어업시찰복명서(韓海漁業視察復命書)』(1899)에는 목포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일본 정부가 조선어업협회 지부를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목포항은 동쪽에 한국 3도의 하나로서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가 있고 목포항에서 나가사키[長崎]에 직행할 때는 그 거리가 부산에서보다 가까운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목포항 부근에는 소안도와 진도와 같은 좋은 어장이 있어 부산과 함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때까지는 판매 기관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항에 기항하는 것이 매우 적고 또 재주 일본인 어업자도 겨우 5, 6호 뿐이며 이들은 일본 거류민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추운 계절에는 한국인과의 거래가 없는 것은 물론 거류민의 수요는 모두 부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년(1899)에 목포항에 수산회사가 조직되고 또 1898년부터 조선어업협회의 지부가 설치되어 오로지 이들 기관의 설비에 급급한바 이후 변영할 것이 틀림없다.¹²⁾

위의 기록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목포는 일본과 가까워 일본 나가사키로 갈 때 부산보다 가깝다. 그리고 소안도와 진도와 같은 좋은 어장이 있어 어업적 장래가 매우 밝다. 하지만 어획물을 판매할 기관이 없어 목포항에 기항하는 어민이 적었기 때문에 일본인 어업단체인 조선어업협회가 설립되고 기반 시설을 갖추면 변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일본은 서해안으로의 어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어구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그 한 가지 중요 어구는 일본에서 발달한 간만의 차를 이용한 안강망어업 기술 도입이다. 이 안강망은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 다마나군[玉名郡] 아라오촌[荒尾村]과 동현 죠슈정[長洲町]에서 발달한 어구로 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새우나 도미, 조기어업에 적합한 어구로 개발되었다. 1854년경 아라오촌 어민이 근해에 풍부한 새우를 어획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고 효율이 낮은 '기둥으로 배를 고정시키고 배의 뱃머리부터 삼각형의 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어획하는 어법[手押し網]'을 개량한 것으로 그물코가 작은 망은 새우그물로 이용하였고 큰 그물망은 도미를 어획하는 도미어구로 발전한 것이다. 안강망은 2~3명의 적은 인원으로 간단히 조업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구 제작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률적 어구로 알려졌다(<그림 3, 4> 참조).

12) 오이타현 내무부, 『한해어업시찰복명서』, 1899,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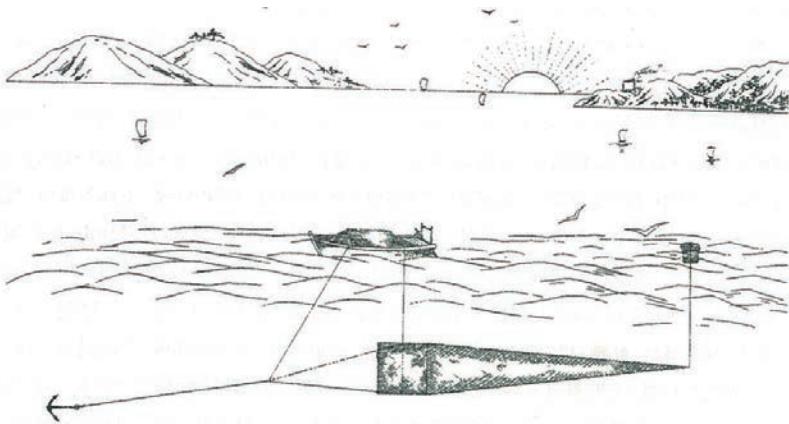


그림 3 안강망 설치도

출전: 히로시마현(廣島縣) 수산시험장(水產試驗場), 『한해안간망시험개황(韓海鯫鯨網試驗概況)』,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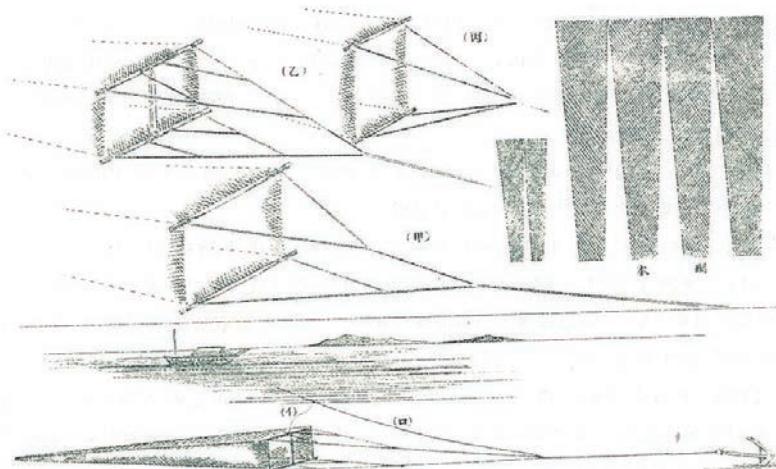


그림 4 구한말 한국 어장에 설치된 안강망.

출전: 농성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 1908.

이) 안강망은 나가사키현 출신 수산기사 쇼바야시 히데오[正林英雄]가 1898년경 서해안에서 시험 조업하였다. 그는 2년간 조업으로 서해안에 적합한 안강망 어업 기술을 개발해 1900년 성공하였다. 따라서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능률적 어구인 안강망이 도입되자 서해안 주요 어구로 발전하였다. 이 안강망 어구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츠모토[松本吉三郎]는) 1898년 조선해는 어족이 풍부하고 히로시마현인[廣島縣人]들이 도미잡이 어업으로 출어한다고 듣고 안강망 어업을 결심하고 동행자를 모으는 동시에 나가사키현에 출어 보조를 신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1899년 7월 하순 8척(각 4명)이 출어하였다. …… (그리고) 1900년 3월 10일 출발하였다. 출어자는 13척(각 3인)으로 증가하였다. 3월 하순에 목포에 도착하였다. 어장 조사 결과 위도, 죽도, 연도, 연평도 부근에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획은 순조로워 언어가 통하게 되자 판매가 쉬워졌다. 7월 하순에 귀국하였다. 다음 해 출어를 준비하여 어선 어구를 만드는 자는 그 규모가 커졌다. 어선의 길이 6간(間) 1척(尺)~7간으로 망 길이 42심~60심으로 하였다. 1901년 3월 10일 출항, 동 하순 목포에 도착하였다. 출어자는 다이라촌[多比良村]뿐만 아니라 미나미타카기군[南高來郡]으로부터 25척이 출어하였고 후쿠오카현[福岡縣]으로도 10여 척이 출어하였다. 어획물 판매도 일본인 중매상이 출어하면서 편리하였다. 어획도 호조여서 6월 하순에 귀국하였다.¹³⁾

마츠모토 기치사부로[松本吉三郎]는 서해안에 도미가 많다는 것을 알고 도미어업에 적당한 안강망 조업을 결심하고 나가사키현에 어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목포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위도, 죽도, 연도, 연평도가 좋은 어장인 것을 확인하였다.

명치 31년 나가사키현 기타타카기군[北高來郡] 이시하야정[諫早町] 쇼바야시 히데오(수산강습소 졸업생) 가 처음으로 본업(안강망-주)에 착수하여 단신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 산지를 돌아다녀 1년 수개월의 세월을 투자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여 여기에 이 어업의 유망한 것을 확신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 어구로써 규슈[九州] 아리아케해[有明海]에서 이용되고 있는 안강망이 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돌아온 후 고심하여 출어 준비를 하였다. 그 다음해 구마모토현[熊本縣] 다마나군[玉名郡] 나가스정[長洲町]으로부터 1명의 실업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본 어업의 시작이다.¹⁴⁾

13) 片岡千賀之, 「あんこう網漁業の発達 -有明海での生成と朝鮮海出漁-,」『長崎大學水産學部研究報告』87, 長崎大学水産学部, 2006, 31쪽.

14) 在韓國釜山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本部,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會報』4, 33~34쪽.

안강망은 주머니망[袋網]을 로프로 뒷에 묶고 망 입구는 위 주변에 뜰[浮子捧, 대나무], 봉돌[沈子棒]을 붙여 조류에 따라 상하로 여는 방식이다. 서해안에서 발달한 전통어구 중선망과 비슷하다. 중선망은 길이가 최대 60심(尋), 망 입구는 가로 세로 약 15심으로, 조류에 따라 1일 4회 조업으로 어선은 5t 정도의 크기로 3~5인이 탑승하였다. 중선망은 해선망과 동일 어법으로 어장에 도착하면 뒷을 내려 어선을 정박시키고 조수의 흐름이 급격해지기 전에 어망을 설치하고 때때로 어망의 말단 부분을 인양하여 그 안에 든 어류를 꺼낸다. 간만 양조기에 조류를 이용한 어업이다.

중선망과 비교해 안강망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 망 입구의 방향을 달리하였고 이동도 쉬워 능률적이고 자본이 적게 들었다. 어획물도 중선망과 마찬가지로 서해안에서 많이 나는 조기와 갈치, 민어였다. 안강망은 적은 자본에 비하여 '이익이 많고 장래 유망한 어업'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서해안 어업에 적합한 어구였다. 전북 칠산 위도 부근으로의 안강망 진출은 1901년 2척이었으나 1902년 75척, 1903년 105척, 1905년 257척, 1908년에는 443척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¹⁵⁾

따라서 풍어일 때는 만 마리도 쉽게 잡을 수 있고 3, 4리~10리 이내의 면 바다 또는 입회 어장으로 이동 하던 중선어업은 안강망 진출로 빠르게 축소·소멸되었다. 중선망은 어구가 크고 무겁고 자본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어구였으나 안강망은 2~3명이 탑승하여 간단한 방식으로 잡기 때문에 노력에 비하여 수익이 높았다. 조기어장에서는 안강망이 빠르게 전파되어 서해안 어장을 일본 어민이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 1900년대 목포항의 모습
출전: 목포신보사, 「목포사진첩」, 1932.

15) 김수희, 「근대 일본식 어구 안강망의 전파와 서해안 어장의 변화 과정」, 『대구사학』 104, 대구사학회, 2011.

목포를 비롯한 서해안에서의 일본인 주요 어업은 도미어업이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에는 목포로 진출한 일본인은 감성돔, 삼치, 방어, 도미, 민어, 상어, 기타 잡어를 잡는다고 기록하였다. 이들은 목포를 근거지로 영산강 또는 군산과 진도, 완도 부근까지 출어하였는데 주요 어구는 도미연승어업이었다. 도미연승 1척의 승선원은 5명으로 각 어선마다 2, 3명 정도의 한국인이 고용되었는데 그들 중 다수는 목포 온금동으로 이주한 제주도인들이었다. 개항기 목포 지역의 일본인들은 제주도인을 고용해 도미어업을 하였다. 제주에서 이주한 제주도인들은 어업노동자로 고용되어 온금동에 집단 거주하였다.¹⁶⁾

또한 일본 사가현[佐賀縣]은 한해통어조합출장소(韓海通漁組合出張所)를 영산강 하류 동탄에 설치하고 일본 어민을 이식하였다. 이들의 주요 어업은 뱌장어갈퀴어업[鰻搔]으로 매년 5월부터 뱌장어갈퀴어업을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계속하였다. 이 어획물은 통조림 원료로 이용되었는데 일본인 가시마 쇼조[香島 松藏]가 통조림으로 제조하였다. 1910년경 일본인 어민 17명이 이식되었고 여름과 가을철에는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 뱌장어 어민이 30~40명 정도 출어하여 뱌장어를 포획하였다. 영산강 주변에서 일본인 어민은 뱌장어, 숭어, 문절망둑, 새우, 굴, 기타 잡어 등을 어획하였다.¹⁷⁾

이와 같이 개항기 일본은 목포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뱌장어 어민들을 이식해 영산강 유역에 일본인 어업 근거지를 설치였다. 이곳에는 한국인이 잘 잡지 않았던 뱌장어가 매우 많았고 일본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통조림으로 제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이렇게 목포가 일본인 어업 근거지로 이용되어 일본인 어촌이 건설된 것은 1900년 러시아가 남하정책을 추진하면서 목포 앞바다 고하도를 점령하고 울릉도와 마산포(馬山浦)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은 목포를 일본인 세력 하에 두기 위하여 일본인 진출을 장려하고 어업 근거지를 건설하는 등 식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2) 개항기 조선인 어업

개항기 목포에서는 해선망어업이 발달하였는데 1900년 후쿠오카현[福岡縣] 수산시험장(水產試驗場) 『한국연해어업시찰복명서(韓國沿海漁業視察復命書)』에는 목포 앞바다의 새우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새우·젓새우는 전라도의 연안 도처에 군래하며 목포·군산 앞바다에서 한국인이 이를 많이 잡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어기는 음력 3~4월과 7~9월이다. 종래로 한국인은 대망(待網)으로 포획하여 이를 건

16)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3, 1910, 117쪽.

17) 조선해수산조합, 「조선해수산조합월보(朝鮮海水產組合月報)」20, 1900, 30~31쪽.

조한다. 다만 젓새우는 이를 염장하여 한국 일반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 산액은 거액에 달한다. 그 염장품은 약 3들이의 높이가 3척, 입구와 밑바닥의 지름이 각각 8, 9촌, 중앙의 지름이 1척 2, 3촌인 병에 담는데 1병의 값이 약 3~4원이다. 이는 주로 초여름에 제조한다. 또한 가을 새우는 값이 1두에 20전 내외이다.¹⁸⁾

위의 설명은 목포의 해선망어업을 소개한 것이다. 새우 처리 방법은 새우를 삶아 건조시키는 방법과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있다. 젓새우는 지름 2m정도의 큰 항아리에 담아 판매하였는데 한 항아리의 가격이 3~4원이었다. 특히 젓새우는 목포와 군산이 유명하여 거래량이 많아 거액에 달했다고 한다.

『임원십육지』 새우잡이 취세하법의 내용을 보면 매월 5~8월까지 서남해 어호(漁戶)가 해양에 망을 설치하여 새우를 잡아 젓갈을 담그는데 어망의 구조는 중선망과 같다고 한다. 이 어망은 새우가 떠다니는 수면에 설치하는데 어망의 설치 방법도 어조망(漁條網)의 경우와 같았다.

『한국수산지』를 보면 해선망 설명이 있다. 해선망은 갈피제(葛皮製) 단사(單絲)로 뜯은 그물코 1분(分)의 직망지(織網地)를 사용한다. 어망 크기는 대·중·소형 3종류가 있다. 대형은 8필(1필은 너비 1척 2촌, 길이 40간), 길이 100척, 망입구(網口) 85척이고 중형은 4필, 길이 47척 5촌, 망입구 45척, 소형은 1.5필, 길이 17척 5촌, 망입구 15척으로 각각 자루 모양으로 봉합하여 만들고 어망의 말단은 자유자재로 한다. 또한 간석지에는 낙지가 많아 사시사철 이를 파내어 잡는다고 한다. 개항기 목포의 주요 어업은 새우와 낙지어업 임을 알 수 있다.¹⁹⁾

무안 몽탄진(夢灘津)에서는 규모가 작은 어구를 사용하여 송어, 농어, 젓새우를 잡았는데 자가용으로 이용하는데 불과하였다고 한다. 몽탄에서는 투망어업과 개막이그물이 있었다. 4~5월 여기에는 수십 척의 어선이 동원되어 투망질을 하는 경관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경관이었다고 한다. 또한 함평면에서는 넙치, 민어, 새우, 굴, 대합 등이 어획되었으나 그 생산량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임해 마을 중 석두리(石頭里)에는 어전 3기가 있었는데 어획물은 넙치, 젓새우, 잡어였고 석계리(石溪里)에 설치된 어전은 해제면 사람이 설치한 어전으로 어획물은 동일하였다. 지호리(芝湖里)에도 어전이 있었는데 사시사철 잡어를 잡았다. 어전리(於田里)에는 망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어획량은 적었다. 목포에는 어전의 좌우 날개가 약 300m정도의 큰 어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넙치, 민어, 새우 등이 어획되어 상업적 형태로 거대 어전이 형성되고 있었다.²⁰⁾

18) 후쿠오카현 수산시험장, 『한국연해어업시찰복명서』, 1900.

19)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1, 1908.

20)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3, 1910.

3. 일제 강점기 목포의 수산업

1) 주요 어업

전라남도 어업자는 1911년 조선 전체 어업자의 40%인 약 7만 명, 1925년 약 12만 명으로 전체 조선인 어업자의 37%를 차지하였으나, 1941년에는 19%로 약 5만 6천 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일제 강점기 동해안에서 대규모 동력선 어업이 발달하면서 전라도에서의 조선인 어업자 인구와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새우 젓갈이나 조기와 같은 제조업 종사자도 1911년 1만 7천 명으로 조선 전체 제조업자의 50%를 차지하였으나 1941년 5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식업 발달로 양식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라남도가 전체 양식업자의 90%를 차지하는 양식업 단작 어업 구역으로 변모하였다. 전라남도 양식업 발달 상황을 살펴보면 1911년 1만 명 정도의 양식업자가 1941년 10만 명으로 10배 증가하였다. 1911~1941년 사이 전라남도에서는 어업자가 약 1만 6천 명, 제조업자가 약 1만 2천 명이 감소했으나 양식업은 9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조선 시대 연안 어업으로 발달한 조선 최고 어장이었던 전라남도 어장이 양식어장으로 변모하면서 양식어장으로 특화되었다.²¹⁾

일제 강점기 목포의 주요 어획물은 민어, 조기, 삼치, 멸치, 도미, 갈치, 고등어, 방어, 상어, 농어, 갯장어, 가오리, 넙치, 뱀장어, 해삼, 가오리 등이다. 『목포부세일반(木浦府勢一班)』(1936)에 의하면 목포부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것은 조기, 도미, 민어, 감성돔 순으로 조기가 일본인 전체 어획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개발된 안강망이 진출하면서 조기 총 어획량의 70%, 도미는 전체 총 어획량의 70% 이상을 일본인이 어획하고 있었다. 그 밖에 민어, 농어, 감성돔의 경우 조선인이 70~80%를 차지하여 민족별로 어종별 어획량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획량이 만 엔 이상인 어종을 살펴보면 도미가 약 7만 엔, 방어가 약 1만 2천 엔, 민어가 1만 9천 엔, 농어가 1만 1천 엔, 조기가 1만 4천 엔, 감성돔이 1만 8천 엔으로 도미가 전체 어획량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목포의 주요어업은 도미였다(〈표 2〉 참조).

표 2 1935년 목포의 민족별 어획고

종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도미	19,354	22,257	44,324	51,933	63,678	74,190
방어	6,289	2,666	14,220	8,553	20,509	12,219
부시리	3,116	2,255	9,777	4,455	12,893	6,710
민어	34,687	13,407	16,473	5,746	51,160	19,153

21) 김수희,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 진출과 어업 경영」, 경인출판사, 2010, 171~175쪽.

종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농어	24,683	9,550	6,169	2,375	30,852	11,925
심치	9,045	2,975	10,865	4,461	19,910	7,436
병어	1,631	682	6,533	4,331	8,164	5,013
돌돔	3,083	853	12,375	3,413	15,458	4,266
조기	20,108	4,065	46,920	9,486	67,028	13,551
갈치	16,178	2,793	29,549	5,424	45,727	8,217
전복	1,391	632	5,561	3,615	6,952	4,247
감성돔	46,771	14,375	11,693	3,594	58,464	17,969
가자미	19,676	6,048	4,920	1,512	24,596	7,560
해삼	-	-	3,165	506	3,165	506
송어	8,325	2,725	-	-	8,325	2,725
불낙	-	-	1,485	616	1,485	616
잡어	16,257	2,469	16,256	2,469	32,513	4,938
붕장어	8,177	1,802	3,510	773	11,687	2,575
고등어	-	-	18,049	3,448	18,049	3,448
갯장어	4,095	1,685	-	-	4,095	1,685
새우	1,719	1,688	424	423	2,143	2,111
상어	10,931	1,490	7,223	994	18,154	2,484
가오리	1,523	202	6,083	807	7,606	1,009
오징어	6,671	2,426	-	-	6,671	2,426
문어	1,845	588	1,320	352	3,165	940
삼치	-	-	22,080	5,724	22,080	5,724
합계	265,555	98,633	298,971	125,010	564,526	223,643

출전: 목포부,『목포부세일반』, 1936.

1935년 목포부 어업자 인구를 보면 전업 인구가 한국인 32호 36명, 일본인 23호 28명, 겸업 인구가 한국인 6호 6명, 일본인 3호 4명, 피고용호수가 한국인 68호 105명, 일본인 6호 6명, 피고용자도 조선인이 68호 105명으로 총 어업자 인구가 138호 185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인 어업자는 32호 39명으로 전체 호수의 23%, 어업자의 21%였다. 그러나 목포부 총 어획량의 53%, 어획 금액의 46%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어 일본인은 경영 규모가 크고 조선인 어민을 고용해 경영하였다.

목포의 주요 어업은 안강망어업, 새우중선어업, 유망어업, 연승어업, 외줄낚시어업이다. 안강망은 도미나 조기를 잡았고, 새우중선은 젯새우, 유망은 삼치나 고등어, 연승어업은 민어, 상어, 가오리, 갯장어, 외줄낚시는 도미, 갈치, 가오리, 고등어, 민어 등을 잡았다. 조기의 주요 어구는 안강망이었고 새우어업은 조선인 전통 어업인 중선어선어업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목포는 해조류 집산지로 알려져 목포 인근 해조

류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황해도 해조류까지 목포에서 수집되고 있었다. 목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해조류는 풀가사리로 모든 해조류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2) 김 양식업과 뱠장어통조림

남해안에서 김 양식업은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나 진도 이북의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광양군에서는 김 양식업이 보급되지 않았다. 1921년 5월 6일 칙령 제200호로 「조선총독부수산시험장제」가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1921년 조선총독부수산시험장이 부산에 설치되었고 전라남도수산시험장은 1924년 7월에 설치되었다. 전라남도수산시험장의 주요 사업은 김 양식 시험사업으로 1924년 목포 삼학도와 16개소에 시험 흉(溟)을 세워 김의 부착 발육 상태를 조사하였다. 1925년에는 완도에서 김 양식지 조사, 김 개량 제조 전습, 김 저장 시험, 굴 양식 시험, 새우 자망 시험 등을 하였다.

1927년에는 김 포자를 이식하는 시험을 조사한 결과 종래 김 양식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진도 이서 및 이북 지방, 즉 무안군(목포), 해남군 서북부, 영암군 서부 연안 등에서 김 양식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목포를 중심으로 한 구역이 우수한 발육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 양식어업에서 김은 본래 간조 시에 노출되는 간석지에서 자라고 또한 간석지의 진흙을 썩혀야 된다고 알려졌지만 전라남도수산시험장 기사카네코 마사노스케[金子政之助]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혀냈다.

첫째, 이동식 흉에서 자란 김은 발육과 품질이 좋아 양식지의 제한을 초월할 수 있고 조수의 간만의 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채취할 수 있다. 둘째, 종래의 학설상 김 포자는 3월경에 살포하여 일단 진흙 속에서 썩혔다가 9월 말부터 10월 말에 걸쳐 다시 부상하여 흉에 부착하여 발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목포 남쪽 구림만(鳩林灣) 시험 조사에 의하면 여름에도 포자가 부착하므로 종래 10월에 하던 건홍을 8, 9월에 하면 조기에 햇김을 채취할 수 있다. 셋째, 생조를 사멸시키지 않고 멀리 운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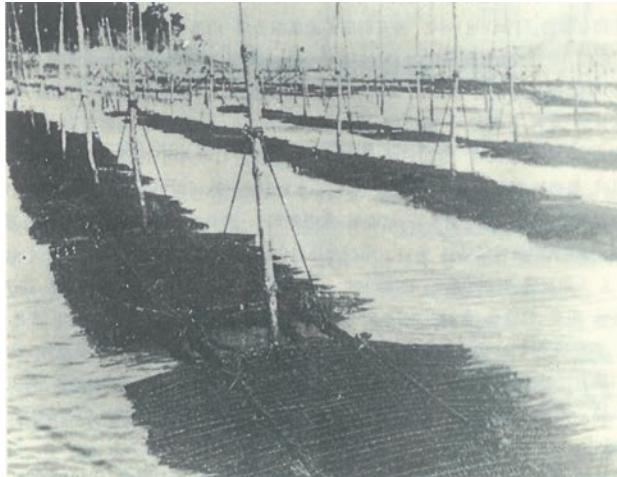


그림 6 수면에 부상한 전남형부흉
출전: 조선총독부, 「시정 30년사」, 1935.

생각하였으나 동결하면 7~9일 보관할 수 있고 움직이는 해수에 담그면 아무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넷째, 5월에도 김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²²⁾

전라남도 목포시협장에서 김 양식법을 개발함에 따라 목포 지방에서 김 양식장 면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일본인 이토 쇼타로[伊藤桑太郎], 후쿠시마 사도[福島佐十] 등은 1929년 목포 외달리와 해남군 황산도에서 김 양식장을 시작하였고 무안군 연해, 압해면 신장리와 장감리에서도 김 양식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 양식어업조합 설립운동이 일어나 1929년 2월 목포 재주 일본인 기노시타 시게하루 [木下重治] 외 4명이 발기인이 되어 압해면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어 목포해태생산조합을 합병하였다. 무안군 내에서도 1930년 3월 20일 기노시타 시게하루 외 4인이 발기하여 군을 단위로 하는 무안군해태어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동년 4월 30일 허가를 받아 동년 8월 11일 압해면해태어업조합을 병합하였다.²³⁾

『조선어업조합요람』(1942)에는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의 연혁에 관한 설명에서 김 양식업의 보급 발달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목포 지방에서 김 양식을 착수한 시기는 1920년대 후반기였다. 1927년 가을 압해면 대천리, 송공리 거주 어업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공동으로 양식어업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1929년에 이르러 목포 재주 일본인이 목포해태상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김 양식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한다.²⁴⁾ 『목포부사』에 의하면 이 목포해태상회는 이리에 다츠죠[入江辰三], 기노시타 센주지[木下千重治] 등 10명이 설립한 익명 조합이었다고 한다.²⁵⁾

동 상회는 1928년 양식어업권을 취득하여 압해도의 송공리 및 대천리에 1,000책(柵)을 건홍하여 김 양식업에 착수하였다. 초년도에는 포자 부착이 불충분하여 별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이듬해의 2차 양식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 각 양식장에 김 제조장을 설치하였고 또 인공 건조 설비도 갖추었다. 처음에는 지방민이 김 양식업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완도 지방에서 숙련자 30명을 고용하여 설비, 양식, 제조 등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사연구』 제2집 김승 연구에 의하면 압해도에서 김 양식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장홍 대역에서 대천리로 이주한 안승규였다고 한다. 그는 1924년부터 김 양식업을 시작하였고 일본인은 1928년 김 양식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무안군 내 김 양식업은 이후 상당히 발달하였으므로 전라남도 당국의 종용에 의해 1930년 3월 20일 군을 단위로 하는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었고 동년 8월 11일부로 압해면해태어업조합을 병합하였

22) 목포문화원, 『완역 목포부사』, 2011, 570~571쪽.

23) 같은 책.

24) 조선수산회, 『조선어업조합요람』, 1942.

25) 목포문화원, 같은 책, 572쪽.

다. 동 조합 조합원의 이용 면적은 549단보(段步) 1,378책에 불과하였으나 1939년 전라남도가 해태 양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김 양식업을 장려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다.²⁶⁾

그 외 목포에서 제조된 수산 제조업 중에서는 뱌장어통조림이 전국에서 유통가는 수산 가공품이었다. 당시 뱌장어 지원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여 하룻밤에 20~30관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뱌장어통조림 공장이 증설됨에 따라 원료 값이 등 귀하였고 경기 불황까지 겹쳐 통조림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일도 있었으나 외환 시세의 하락 및 인플레 경기와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의 뱌장어통조림 제조 중지 등으로 다시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뱌장어통조림 제조 업체는 목포의 쇼쿠텐 식품통조림제조소[食田食品罐詰製造所]였다. 동 업체는 목포연안 및 근해와 영암을 위주로 하여 멀리 진도, 남해 등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 외에 이리, 강경, 김제, 신태인(新泰人) 등에서도 공급받았다. 몽탄(夢灘) 방면의 통조림 공장은 소속 어선 어부를 동원하여 직접 사거나 중매인이 가져온 것을 사서 사용하였다. 생산된 뱌장어통조림은 일본의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에서 판매하였으나 이곳을 중계로 주로 하와이나 남양 방면으로도 수출하였다.²⁷⁾

4. 목포의 전통적 어시장과 일본인 어시장

1) 조선의 전통적 어류 유통 구조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과 교환 경제의 발달로 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어업은 자가 소비 비중보다 상품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어획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객주(客主)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시로 운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세 어민은 인근 시장으로 직접 운반하여 판매하였고 장사배는 해상에서 열리는 바다시장 파시에서 구입하였다.

(조기) 판매 방법은 먼저 장사배의 손을 거쳐 가장 가까운 시장에 운반된 후 각 지방으로 운반된다. 장사 배는 대개 어선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하고 출어 시에는 항상 이에 따라 다녀 어장에 이르러 어획하는 옆에서 이를 매수한다. 어선은 절대로 그 특약 장사배 외에는 마음대로 판매하는 일이 없다. 장사배가 어획물을 매수할 때는 조기 천 마리를 700마리로 계산한다. 즉 300마리는 부채 이자로 취한다. 때에 따라 한

26) 김승, 「무안반도 연안수역에서의 김 양식 기원과 식민지적 어업구조 형성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수산업사연구』2, 수산업사연구소, 1995.

27)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앞의 책, 51~52쪽.

척의 어선에 3척내지 5척의 장사배가 있다. 그들은 어선 주위에 정박하여 차례로 어획물을 매수한다.²⁸⁾

조선의 어류 유통은 어민→장사배→객주→중매인→소매인 순으로 유통되었는데 장사배와 객주는 어획물 위탁 판매자였다. 장사배가 어획물을 매집해 오면 객주는 장사배로부터 10%의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장사배가 어획물 매집을 위해 어민들에게 어업 자금을 미리 대여하였는데 장사배는 어획물 매매 시에는 ‘뺀다’라고 칭해 어획물을 매입할 때 1,000마리를 700마리로 계산하였다. 즉 월 1분 반 정도의 이자 비율로 300마리를 이자로 받았다. 보통 1척의 어선에 3~5척의 장사배들이 어업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들의 거래는 관행적이었다.

대체적으로 칠산바다 부근으로 출어한 장사배는 법성포, 군산, 강경으로 어획물을 운반하였고 연평도의 장사배들은 경성 부근, 마포, 진남포 각 시장으로 운송하였다. 1910년 조사에 의하면 연평도어장으로 중선 어선이 80척 출어하였고 여기에 부속하는 장사배는 300척 이상이었다고 하였다. 어민들은 고기떼를 따라 이동하였고 장사배들은 자신에게 부속된 어선을 따라 이동하며 시장으로 운반 판매하였다.

『한국수산지』에서는 장사배들의 활동을 전하고 있는데 “칠산과 같은 곳에는 팔도의 어선들이 이곳으로 폭주하고, 상고선 또한 어선들을 따라 모여든다. 둛, 둛대, 선체들이 복잡하게 얹혀 흡사 해상에 큰 섬이 출현한 것과 같이 보인다. 밤이 되면 각 배마다 불을 피워 어획을 표시하여 장사배를 부른다. 이 때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그 미려함과 장엄함이 장관을 이룬다.”고 그 경관을 기록하였다.²⁹⁾

『한해통어지침통(韓海通漁指針)』에도 칠산어장을 조기의 중심어장으로 소개하며 장사배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업계절이 되면 8도의 어선이 이곳에(칠산) 폭주하고 하여 어선은 종행하며 달리고 장사배가 분주히 왕래한다. 둛과 노가 번잡이 움직이며 칠산어장은 많은 배들로 덮여 성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밤이 되면 어선들이 불을 밝혀 자기가 어획한 것을 표시함으로써 장사배가 사방에서 폭주하는데 백여 척에 이른다. 시종 어장을 배회하며 물고기를 사며 이것을 선내에 염장하고 바람과 조류에 따라 빠르게 부근 포구에 가서 판매한다.³⁰⁾

이러한 장사배들의 광경은 ‘성대하고 불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신속하고 활발한 활동이었다.

28)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1, 1908, 228~229쪽.

29) 같은 책, 226쪽

30) 蔡生修亮, 『한해통어지침』, 1903, 431~432쪽

한편, 구한말 조선 어장으로 진출한 일본 어민들은 서해안으로도 진출하였지만 어획물 판매가 어려웠다. 일본 판매 시장과 멀고 조선인에게 판매하려고 해도 어종에 대한 기호도가 달라 매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1905년 서해안 수산물 시장 강경에 집산되는 어류는 조기, 부세, 갈치, 도미, 민어, 흉어, 상어, 고등어, 대구, 새우, 정어리, 잡어 등이다. 이 가운데 부세, 도미, 민어, 잡어의 80~100%는 모두 일본 어민이 어획한 것으로 서해안으로 진출한 일본 어민들이 강경 시장에 판매한 것이다. 일본인은 어획물을 강경 시장 객주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강경과 같은 일본인 어업 근거지에 일본인 어시장을 설립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어업 근거지에 일본인 어시장을 설립하고 어장으로 운반선을 투입해 어획물을 일본인 어시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조선 어장을 지배하기 위하여 수산물 유통 구조 지배권을 확립하고 일본인 어시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일본인은) 스스로 상당한 운반기관을 구비하여 어장에 나가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어류를 매입한다.

이것을 집산지의 가격으로 매입하면 조선인 어획물을 빼앗지 않는다. 정말로 자동적으로 자기 상품을 채집할 수 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는 간접적으로 조선인의 영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조선인이 어떠한 항변도 제기할 수 있는 구실은 없다. 이와 같은 세월이 경과하는 사이 어류매매에서는 결국 우리 세력을 싫어하여 묵종하게 된다. 종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추측하는 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여 시세를 살펴 점차 매수하면 수년이 지나지 않아 면강수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매매권을 독점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³¹⁾

일본은 1906년 러일전쟁에 승리하자 조선 정부와 「조선 연안 및 항해 약정」을 체결하여 조선 연안에 어시장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운반선이 각 어장을 항해하는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인 어시장을 수산물 유통 구조의 중심부에 두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여 객주는 일본인 설립한 일본인 어시장의 지정 중매인이 되어 수산물 입찰을 하였고 장사배는 일본 어시장이 경영하는 운반선이 항해함으로써 어획물 구입이 어려워 어업 생산 수단을 전대(全貸)하거나 어업 자금을 대여하였다. 목포의 수산물은 객주나 장사배에 의해 소매인에 판매되고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시장인 장시에서 거래되었다. 당시 목포 시장에서 거래된 수산물은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어민들이나 상인에 의해 유통된 것이다.

31) 下啓助·山脇宗次, 「한국수산업조사보고(韓國水產業調查報告)」, 농상무성수산국, 1906, 97쪽.

2) 일본인 어시장

목포의 근대적 어시장은 1897년 10월 1일 목포항 개항과 동시에 설립되었다. 개항과 동시에 어시장이 설립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목포를 일본인 어업 근거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최초로 설립된 목포수산주식회사은 부산수산주식회사의 지점 형식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 과정을 『목포부사』(1930)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목포항에서의 어류의 집산 기관은 어시장으로 그 남상(濫觴)은 멀리 개항 당시로 소급된다. 즉 1897년 겨울 부산에서 이주한 일본인 시라이 보[白井朴]와 19명이 상의하여 해산회사를 조직하고(일설에는 부산 수산주식회사의 지점으로서 설립된 것이라고 한다.) 어시장을 목포대에 설치한 데서 시작하였다. 토착의 소수 어선과 때때로 기항하는 통어선(일본에서 어기에 이르러 통어하는 것)의 어획물을 취급하였으나 당시 일본인과 거주자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육지지방으로서의 교통이 불편하였던 관계로 판로가 매우 좁고 수치가 맞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중에는 주금(株金) 납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도 있어서 1900년에는 벌써 이를 해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오이타현[大分縣] 나카우라 후쿠이치[長浦福市]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를 계승하여(2,500엔으로 인수하였다고 함) 자본금 5,000엔을 투자하여 경영을 계속하여 1910년에 이르렀다.³²⁾

위의 내용을 보면 1897년 시라이 보 외 19명은 부산에서 건너와 부산수산주식회사의 지점 형식으로 설립하였지만 목포항으로 가는 일본 어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00년 목포 거주 일본인 나카우라 후쿠이치가 부산수산주식회사 지점을 인수하여 어시장 사업을 시작하였다. 설립연도는 1900년 9월 6일이고 자본금 5,000엔이었다. 당시 부산에 설립된 부산수산주식회사 자본금은 60만 엔, 인천수산회사 어시장 30만 엔, 경성수산회사 6만 엔으로 시장의 규모가 컸지만 이에 비해 목포수산주식회사는 자본금이 매우 적었다. 목포 개항과 동시에 일본 어민을 이식해 일본인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목포수산주식회사는 일본인 어업 근거지의 전초 기지의 역할로 활용되었다.

1909년 『한국수산지』에 기록된 목포수산주식회사의 영업 실태와 집산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은 일반어시장과 다를 바 없었으나 개시는 아침 1회에 그쳤다. 경매 수수료는 선어, 염어, 건어 모두 1할을 징수하였다. 중매인은 8명이 있었는데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30엔의 보증금을 내어야 했다. 결

32) 목포문화원, 앞의 책, 504쪽.

제는 물건 주인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에 하고 중매인에게는 10일 계산이었다. 중매인 장려방법으로서 조성금에 의해서 1년간 매입고의 0.1%를 지급한다.

시장을 휴업한 시기는 겨울철 12월부터 다음해 2월에 이르는 3개월이고 그 외의 시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다. 시장에 출하되는 어류의 중요한 것은 도미로서 사계절을 통해 양육량의 수위를 차지한다. 그 1년 중의 매상고는 총 양육량의 7할에 상당하다. 도미가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는 가을철이며 12월부터 봄철까지는 적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획고의 다소에 의한 것은 물론이나 주로 동기에 있어서의 어장의 원근과도 관계가 있다. 즉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에 출하되는 도미는 주로 제주도 및 선죽도 연해에서 어획되고 5~6월 도미는 추자도 및 위도 균해에서 8~11월은 진도, 소안도 등의 균해에서 12월은 청산도 또는 균해에서 어획된 것이다.³³⁾

목포수산주식회사에서 거래되는 주요 어류는 도미였고 목포에 거주하는 일본인어업자 14인이 14척의 어선으로 어획한 것이었다. 도미는 서해안 청산도부터 남해도, 추자도 인근에서 일본 어민이 어획한 것으로 한국인이 어획한 것은 거의 없었다.

『목포지(木浦誌)』(1914)에는 1904~1912년의 월별 어시장 매상액 통계가 실려 있는데 1910년까지의 합계액을 보면 1904년 9,782엔, 1905년 13,729엔, 1906년 15,234엔, 1908년 20,875엔, 1909년 19,273엔, 1910년 24,024엔으로 19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목포수산주식회사는 도미가 주요 거래품목이었고 1928년 이후에도 도미가 전체 어획고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목포는 도미어장으로 활용된 어장이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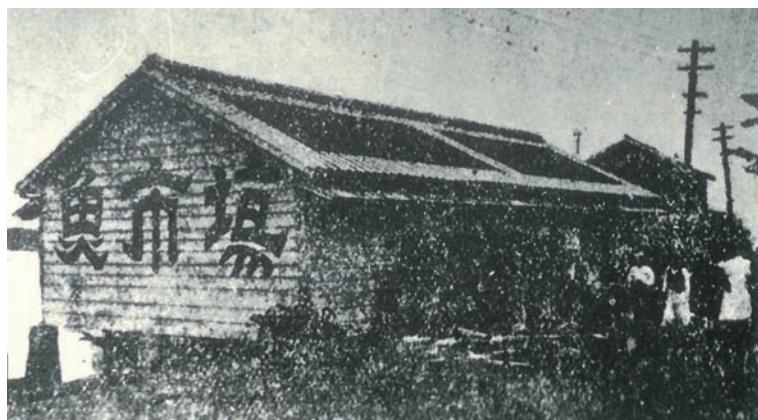


그림 7 목포수산주식회사 어시장
출전: 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

33)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1, 1908, 422~423쪽.

34) 김정섭 옮김, 『목포지(木浦誌)』, 향토문화사, 1991, 348쪽.

1910년 조선총독부는 시장을 단속하는 잠정적 조치로 각 지방 장관에게 통첩을 시달하여 시장의 설치, 변경을 총독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36호 시장규칙을 공포해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 법령을 제정하였다. 목포수산주식회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사히시장[旭市場]으로 변경, 개설되었다.

『목포부사』에 의하면 목포수산주식회사가 경영을 포기하자 이시모리 게이지[石森敬治], 아소 사쿠오[麻生作男]가 목포수산주식회사를 영업권료 12,000원, 기타 건물 집계, 대부금 인수금 등 4만 원을 지불하고 인수함으로써 어시장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한다. 1921년 3월 5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사장은 이시모리 게이지, 전무이사 아소 사쿠오, 자본금 25만 원, 영업 목적은 수산물 매매, 위탁 판매, 수송, 가공 제조 및 당업자 자금 대부 등 이었다.³⁵⁾

그러나 목포수산주식회사를 인수한 아사히시장은 조선인 객주조합과 물상객주들과 경쟁하는 형태로 조선인 객주의 어물을 중간에서 빼앗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1925년 2월 8일자 『조선일보』에는 아사히 어시장의 횡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사히시장이 생기여 난 이후로는 그들의 힘악한 착취수단이 점점 문옥조합 등을 박멸하고자 사방으로 활동하여 배가 들어오는 근처에다 건물을 짓고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붙잡고 헐난하다가 반관적(半官的)의 수단을 사용하여 떠어놓고 물건 주인의 승낙 여부도 상관없이 자기의 시장으로 끌어드려 고기값은 자기의 마음대로 주고 물건 주인들이 혹 항거하고 격투도 하였으나 이것을 본 경찰당국은 제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사히 어시장의 행동을 은연히 도우는 바, 아래 항상 불평이 많은 배 주인들이 일치하여 결의하고 봉변을 당하더라도 문옥조합과 객주조합을 찾아가서 물건을 매매하였다.³⁶⁾

아사히시장은 권력을 이용해 조선인 수산물을 빼앗고 제 가격을 주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 수산물이 15원이라면 8원밖에 쳐주지 않았고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50원의 위탁금을 위탁하라는 등 권력으로 조선인 어물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조선인 객주들은 일본인 어시장 경영에 반발하였고 이시모리 게이지를 ‘뱀처럼 싫어하며’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사히시장의 거래량은 매년 증가하여 목포의 대부분의 어획물을 처리하였다. 1928년 아사히어시장이 판매한 주요 수산물 중에서 판매량이 1만 관(1관=37.5kg)이 넘는 어종은 도미, 민어, 상어, 감성돔, 고등어였고 1천 관이 넘는 것은 방어, 둑돔, 가자미, 황돔, 조기, 전갱이, 숭어, 문어, 멸치, 농어, 준치, 삼치, 양태,

35) 목포문화원, 앞의 책, 505쪽.

36) 『조선일보』 1925. 02. 08. 「목포의 일대 문제 일인 어시장의 횡포로 어업자 일동의 불평이 폭발 경찰 태도까지 일반은 의심」.

부시리, 볼낙, 갯장어, 오징어, 문어, 새우 등이었다. 도미는 수량에 있어서 12.8%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에 있어서는 3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의 상품이었다(표 3) 참조).

표 3 1901~1928년 목포수산주식회사에서의 도미 거래량

연도	수량	매상고
1901		5,000원(도미 7할, 감성돔 2할, 민어 기타 1할)
1902		5,300원(도미 7.5할, 감성돔 1.5할, 민어 기타 1할)
1903		5,750원(도미 7할, 감성돔 2할, 민어 기타 1할)
1904		6,902원(도미 6할, 민어 2할, 기타 2할)
1905		13,120엔(도미 6할)
1906		15,662엔(도미 6할)
1907		20,910엔(도미 5할)
1912	81,537관	57,598엔(도미 5할)
1916	138,997관	72,061엔(도미 4.5할)
1921	183,683관	232,012엔(도미 4.5할)
1926	225,779관	289,219엔(도미 4.5할)
1928	174,530관	280,100엔(도미 3.2할)

출전: 목포문화원, 『원역 목포부사』, 2011, 507~511쪽.

아시히시장은 1937년 목포어업조합으로 통합되면서 폐업되었는데 1936년 아시히어시장의 매상고를 보면 수량 604,936kg, 가격 237,706엔이었다. 총 매상고의 84%는 국내 소비로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일본과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5. 수산단체

1) 목포어업조합

1911년 6월 3일 제령 제6호로 공포된 어업령에는 전용어업제도와 어업조합규칙이 창설되었다. 구 한국 정부가 1908년 11월에 공포하고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어업법에는 어업권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었을 뿐 전용어업제도(마을공동어장제도), 입어제도, 보호구역, 수산 단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1912년 울산군 연안 해조어장 이용권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제주 해녀들과의 분쟁이 발생해 유혈 사태로 확대되자 총독부는 「어업령」을 공포하여 전용어업제도 창설과 전용 어업권의 근대적 소유 주체가 될 어업조합제도를 창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용어장을 정하고 이용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어 관행과 보호 구역 및 수산 단체 창설을 정하였다. 어업령에서 말하는 입어 관행은 “전용 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전용 어장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관행에 따라 어장을 이용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어업을 입어라고 하고 입어료를 관리하는 어업단체를 설립하도록 하였다.³⁷⁾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의 설립 규정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설립한다.”(제16조). “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의 시설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7조),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 설립, 관리, 감독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는 것으로 어업자는 일정한 지구 내에서 어업조합을 설립하고 필요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1912년 2월 23일 어업조합 규칙과 수산조합규칙을 공포하였다. 어업조합의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합규칙

제1조 본령에서 조합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업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어업조합을 말한다.

제2조 조합의 지구는 면의 구역 또는 면내의 부락의 구역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중복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조합의 명칭 중에 어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조합 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은 조합의 지구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한 규약, 초년도의 경비의 수입예산 및 부과징수방법을 갖추어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역 내의 어업자의 일부로써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합원이 될 어업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될 어업자는 타어업자에 위임하여 전항의 동의를 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자는 위임장을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구 및 전조(前條) 단서(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
4. 사무소의 소재지

37)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 이용과 그 갈등 양상」,『지역과 역사』21, 부경역사연구소, 2007.

5.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6. 간부[役員]에 관한 규정
7. 회의에 관한 규정
8.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규정
9. 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의 행사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입여에 관한 규정
10. 공동시설사업의 집행에 관한 규정
11. 위약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
12. 존속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정산에 관한 규정

제6조 조합은 설립의 허가가 났을 때에 성립한다.

조합이 성립한 때에는 그 지구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그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될 어업자도 같다.

제7조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간부[役員]을 둔다.

조합장

감사: 전항의 간부 외에 규약의 규정에 의해 다른 간부를 둘 수 있다.

간부는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에 한하여 발기인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다른 간부 또는 사무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 조합장은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 및 사무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조합장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간부가 이를 대리한다.

제9조 다음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초년도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비의 수지예산
2. 경비의 부과징수 방법
3. 어업권의 얻고 잊음[得喪], 변경 또는 빌림[借受]
4. 기금의 지출 또는 그 이용 방법
5. 기책 및 상환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어업권의 대부
8. 규약의 변경
9. 조합의 해산: 전항의 제3호,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든 사항의 결의는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기재한 사항의 결의는 지방 장관,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에 기재한 사항의 결의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조합장은 매경비의 수지결산서, 잉여금의 처분서, 재산목록 및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감사의 심사 를 받아 이를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조합은 매년 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은 천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현저하게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 조합에 관하여는 수산조합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제3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에 처한다.

제14조 조합의 행위로 본령에 의한 기금의 적립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부당히 지출한 때에는 그 간부 또는 청산인을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어업령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일정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로서 어업령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으로써 본령 시행 전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본령 시행 후 6개월 내에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허가 를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본령 시행전의 설립에 속하는 조합은 전항출원의 허부(許否) 처분을 받을 때까지 종전 의 예에 의한다.³⁸⁾

이상과 같은 어업규칙은 조합의 지구, 조합의 명칭, 조합의 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 조합 규약의 기재 사 항, 강제 가입, 조합의 간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조합 경비의 결산과 조합 재산의 관리, 잉여금의 적립과 지출, 벌금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어업조합은 1913년 14개소, 1914년 36개소, 1929 년 말에는 162개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조선어업령」과 「조선어업규칙」이 시행된 1930년에는 204개소,

38) 「조선총독부관보」 제445호, 1912년 2월 23일.

1931년에는 211개소, 1942년에는 198개소의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41년 각 도별 어업조합 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44개소,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36개소, 강원도 18개소, 함경북도 19개소, 충청남도 12개소, 평안남도 11개소, 평안북도 11개소, 함경남도 10개소, 경기도 8개소, 충청북도 7개소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편중되어 설립되고 있었다.

또한 조합원수를 보면 1935년 약 12만 8천 명, 1939년 15만 명, 1940년 15만 2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 조합원수는 1933년 약 6만 2천 명, 1935년 약 6만 4천 명, 1939년 7만 명, 1940년 약 7만 2천 명으로 전체 조합원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조선 전체 어업조합의 22%였지만 조합원수는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어업조합이 김 양식의 노동 집약적 성격으로 군 단위 조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³⁹⁾

표 4 전국에 설립된 어업조합 조합원수

구분	1933	1935	1937	1939	1940
전남	61,449	63,723	65,895	70,467	72,335
경기	536	1,457	2,604	2,607	2,457
충남	1,419	1,730	2,851	5,798	5,446
전북	1,754	1,917	1,952	2,086	2,112
경북	5,298	5,550	5,536	5,835	5,873
경남	17,063	17,554	22,232	24,102	23,751
황해	4,663	5,119	7,434	8,939	9,493
평남	2,761	3,511	3,707	4,429	4,157
평북	3,533	3,478	3,577	3,609	3,445
강원	7,428	6,990	7,108	7,263	7,643
함남	4,649	5,856	6,830	8,038	7,737
함북	5,975	5,862	6,373	7,209	7,529
계	116,528	122,747	136,099	150,382	151,978

출전: 조선총독부 식산국, 『조선의 수산업(朝鮮の水産業)』, 1933~1940.

무안군어업조합은 목포부를 통합한 어업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목포어업조합 조합원이었던 박인배(1909생)의 증언에 의하면 총독부가 무안군어업조합에 목포부를 포함시키려고 하자 목포 어업자들이 독자적인 어업조합 설립을 주장하며 부채가 있는 무안군어업조합 관할 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목포부 어업자가 총독부에 제출한 진정서는 다음과 같다.

39) 조선수산회, 앞의 책, 1942.

진정서

근래 소문에 의하면 무안군해태어업조합에서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그 지구 내에 목포부를 포함시키려고 당 부내(府內)의 일부 어업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 부내의 어업자는 몇 해 전부터 수차에 걸쳐 목포어업조합 설립에 관하여 전원 찬성 조인을 하여 인가 신청 수속을 기획하였으나 적당한 이사자(理事者)의 전형(銓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청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은 다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 가입 조합원에게 부채를 지우지 않고 김 판매 수수료로써 점차 상각(償却)할 계획이라고 하오나 결국은 조합원 일반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 부내의 어업자는 견디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부내의 어업자는 무안군의 어업자와는 크게 사정이 달라 동일 조합 하에 통제되는 것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 군산, 진남포 등의 예를 보더라도 부읍(府邑)에서 단독 조합을 조직하고 있는 정세입니다. 당 부내 어업자도 가까운 날에 조합 설립 인가 허가를 할 것이오니 모쪼록 잘 배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에 부내 어업자 일동 연서로써 삼가 진정합니다.

돈수재배(頓首再拜)⁴⁰⁾

목포부 어업자는 무안군해태어업조합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1937년 7월 2일 목포어업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공동 사업으로 아사히어시장을 통합 흡수하고 어획물 위탁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목포어업조합의 가장 큰 사업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41년 9월 1일부터는 선어 및 패류의 보급을 통한 소매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목포 내 선어패류의 수급 조절과 배급 어획량의 확보를 위해 적정한 소매가격을 구현하자는 의도로 첫째, 매일 아침 본 조합 판매소에 양육되는 어류의 3 할 내외의 수량을 나누어 소매 배급으로 한다. 둘째, 본 조합이 지정하는 소매인 65명에게 소매 증표와 완장을 부착하도록 한다. 셋째, 매일 아침 판매소의 낙찰 가격에 전체의 3할 이내의 이윤을 가산한 소매 가격표를 발행한다. 넷째, 소매인의 결제는 현금 결제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금융 사업은 1938~1940년까지 자금 대부와 공제 저금으로 실시되었다. 자금 대부 실적을 보면 1938년 3계좌 1,150엔이 1940년 27계좌 13,500엔으로 증가하였고 공제 저금도 1938년 11계좌 692.17엔이 1940년 30계좌 9,724.64엔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1940년 이후 계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40)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앞의 책, 188쪽.

41) 같은 책, 52~57쪽.

2) 조선수산조합 전라남도지부

총독부는 제령 제6호 「어업령」을 1911년 6월 3일에 공포하고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본문 29개조와 부칙 7개로 구성된 「어업령」은 제16~19조에 수산단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였는데 수산조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어업자 또는 수산업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수산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수산조합 설립에 필요한 수산조합규칙이 1912년 2월 23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3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03년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따라 조선 어장에 설립된 일본인 어업조합인 조선해수산조합을 「어업령」 제35조에 규정한 수산조합규칙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수산조합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조선해수산조합은 1912년 7월 정관을 개정하고 조선수산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일본은 전도를 구역으로 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어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수산조합을 설립하였다. 조선해수산조합 사업은 수산업의 개량 발달, 한일 어업자의 조난 구제, 의료, 방역, 분쟁 중재, 어업 출원의 대변, 우편물 취급, 어업자 이주 장려 등이었다. 조선수산조합 전라남도지부는 목포부 해안통(海岸通) 1정목 2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석유발동기선 1척을 소유하고 있었다.

3) 목포해조수산조합

1914년 7월 설립된 목포해조수산조합은 도 또는 부·군을 구역으로 하고 수산 제조업,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 경위를 보면 1913년 5월 수출 해조류에 대한 해조이출검사규칙이 공포되자 해조류 판매자들은 수산조합규칙에 의거해 1913년 6월 목포해조수산조합을 창립하고, 대표자 다니무라 도조[谷村道助] 외 한국인 7명과 일본인 11명의 연서로 당국에 허가를 신청, 목포부 항정(港町) 관세장에 제품 집하장을 설치하였다. 종래 폐단의 원인이었던 각자의 점포에서 개별 거래를 금지하고 모두 제품 집하장에서 충분히 건조한 다음 경매 입찰에 붙이고 불량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마련하였다. 목포가 일본으로 해조를 수출하는 근거지로 발전하면서 참가사리 60%가 목포에서 집하수출되었다.

4) 전라남도수산회

1923년 1월 13일에 「조선수산회령」이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산회의 지구와 명칭, 수산회 회원,

경비 또는 과태금의 징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수산회 해산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라남도수산회는 별도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 내에서 어업 또는 수산물의 제조, 거래 혹은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지구 내에 있어서 어업권을 향유하는 자가 가입하였다.

1923년 2월 26일 본문 3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선수산회령 시행 규칙」이 조선총독부령 제26호로 공포되었다. 조선수산회령과 동 시행규칙은 19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목포해조수산조합은 해산되고 동 수산회는 1926년 4월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남해, 무안, 영광, 완도, 진도, 제주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다도해에 회원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전라남도수산회가 실시한 사업은 ① 수산 제품 검사, ② 강습·강화, ③ 회원 및 종사자의 질병 구호, ④ 조난 구제, ⑥ 수산에 관한 출원 대변, ⑦ 어촌 조사, 기타 시험 및 조사, ⑧ 공로자 및 선행자 장려, ⑨ 품평회, 공진회 등의 개최, 출품 및 알선, ⑩ 임해 어촌의 자제 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임해초등학교에 대한 수산 교재 기증, ⑪ 수산 집담회의 개최, ⑫ 공동 우물 굴착, ⑬ 수산업 개량에 관한 행정 관청에 대한 건의 등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목포가 김 생육 조건에 적당하였으므로 1923년 흥(漸)을 고하도, 기타 여러 곳에 설치하여 김 양식 시험을 하였다. 또한 1928년 지방비 16,800엔의 보조를 받아 총 35t의 순라선 남봉환(南鵬丸)을 건조하여 회원의 보호, 지도, 조난 구호 및 통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전라남도수산회는 1927년 본부를 광주군 광주면 도청 내로 이전하였고 목포에는 주재소가 설치되어 기사 이하의 직원이 주재하였다.

5) 해산물상조합(海產物商組合)

해산물상조합은 1924년 6월 11일에 설립된 임의단체이지만 1914년 설립된 목포해조조합(木浦海藻組合)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해산물 생산자와 중매업자, 무역업자를 포함한 단체까지 전라남도수산회로 변경된 후 수산물의 생산, 제조, 매매 및 보관상의 폐해를 고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원래의 해조수산조합과 유사한 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1924년 5월 14일 해산물상조합을 신청하여 6월 11일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 인가에 있어서 도지사는 ‘본 조합은 임의조합이지만 그 목적과 경영 사업은 본 도수산회의 사업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수산제품 및 거래의 개선상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관청에서 보호 지도해야 할 사설 조합으로서 인가한 것인 만큼 충분히 소기의 목적 달성을 노력할 것’이라고 통첩하였다.

해산물상조합의 주요 사업은 ① 해조(海藻) 검사, ② 일보(日報), ③ 공진회 및 품평회, ④ 판매조사, ⑤ 표준 채집, ⑥ 가마니 공동 구입 등이다. 이 가운데 해조류 제품의 개량, 거래에 관한 것은 조합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은 해조를 매일 사무소 앞 공동 물양장에 반출하여 협작물을 선별 배제

하고 또한 건조를 충분히 한 후에 전라남도수산회의 검사를 받고 그 합격품에 대하여 양자 입회하에 입찰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 그 거래량을 매일 표로 만들어 관청, 공공단체, 금융업자 및 당업자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해산물상조합의 무역상은 조합원을 속이고 단합하여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 조합 무역상은 이시모리 게이지[石參敬治], 모리 사카이[森酒井], 요부코 나오시치[呼子直七], 아베 나카우에[阿部中上], 암마우치 헤이죠[山内平鳥], 암마노 다키죠[山野瀧三], 마에하타 마루타다[前畠丸忠], 조선인 김경태(金景泰)인데 이들은 50원을 위탁하여 조합원이 위탁한 해조류를 매매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이노시세’라고 하는 암호를 이용해 중간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노시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해조 한 가마니 가 천원이라면 미리 단합하여 800원으로 정하고 200원의 차액은 서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횡령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10여 년 간 착취당한 것에 분개하여 추심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 탈퇴서를 해산물상 조합에 보냈다.

1926년 4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목포해산물문육조합(木浦海產物問屋組合) 조합원 93명은 일본인 무역상의 횡포를 규탄하고 동년 4월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결정하였다.

결의사항

一. 해산물상조합 처치에 관한 건

(가) 조합원 중 매수권이 일부 자본가인 몇 명의 일인에게만 있음으로 이것을 기회로 하는 이들은 조합을 빙자하여 상업상 부도덕한 사기술이 많다. 이에 상업상 도덕을 밝히고 상업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조선인 문육조합원 일동은 적극적으로 이를 복멸할 것.

(나) 해산물을 매수할 때 일본인들이 년내로 사기적으로 착취한 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빠짐없이 환수하되 만일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어제까지든지 법에 부쳐 처리할 것.

二. 해초 매매에 관한 건

이러한 피해는 매수권이 그들에게만 있어 발생한 것이니 우리도 거래 방법도 아는 동시에 우리 문육조합이 현재 기본금 2만여 원이 있으므로 먼저 이것으로 자본을 삼아 위탁을 받아 본 조합에서 직접 매수할 것.⁴²⁾

42) 『조선일보』 1926. 04. 14. 「착취당한 것을 추심하기로 결의」.

무역상들은 자금으로 조선인을 회유하려 하였고 감언이설로 달래거나 위협하였다. 조합원 20여 명은 연명으로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합을 해산해 매매권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해산물 집산지로 유명한 목포에서는 일본인 무역상이 매매 독점권을 가지고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⁴³⁾



그림 8 목포에 집산된 해조류의 손질 광경

출전: 개조사(改造社),『일본지리대계(日本地理大系)』12, 조선편, 1930

43) 「조선일보」 1926. 04. 15. 「목포 해조 문제」.

제2절 현대 목포의 수산업

1. 현대의 수산업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관내의 해안선 길이는 338km이며 도서가 2,100개 산재해 있다. 연안 평균 수심은 50m내외의 얕은 대륙붕에 간석지가 있으며 이곳으로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 내륙에서 강이 유입되고 있어 다양한 각종 수산동식물의 서식과 산란에 적합한 천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안선은 굴곡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광대한 대륙붕을 이루고 있어 갈치, 조기, 가자미, 넙치, 민어 등이 어획된다. 갑각류는 대하를 비롯하여 빨간새우, 중새우, 젓새우, 갈색줄새우 등이 어획되고 있는데 특히 대하는 3월과 4월에 걸쳐 연안으로 접근하는 산란군이 있다. 또한 연안의 광대한 간석지와 잔해는 각종 패류의 적합한 서식조건을 이루고 있어 굴, 바지락, 백합, 새꼬막, 맛, 동죽 등이 양식되고 있으며 김 양식의 적지로 김 생산량이 많다.

1) 수산업 종사가구와 인구

1962년 착수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수산업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원양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양식장 개발 정책으로 수산업은 호경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7년경에 시작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시대 개막으로 어장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은 후퇴 경향을 보였고 근해어업도 둔화되면서 어업 구조가 변하였다.

목포의 수산업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실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근해어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연안 영세 어업이나 김 양식업 등 영세 소규모 어업 구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근해어업이 축소되면서 어가 가구나 어업 인구가 감소하였다. 수산 통계표에서 살펴보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후의 구조 변화를 알 수 있는데 1962~1988년 사이 어가 가구가 735~3,183호, 인구는 4,370~16,554명으로 증가했지만 1987년 이후 어업자 인구가 감소하고 어업 세력도 크게 저하하고 있었다.

<표 5>를 보면 1990년 2,058호 가구가 2년 후인 1992년 1,059호로 반 이하가 감소하였고 수산업 인구 정체는 2004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어가 인구는 1990년 4,673명이 1994년에는 5,527명으로 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었다. 전업 가구가 감소하였지만 어가 인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 어가 가구가 1,014호였지만 2006년 1,883호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어업자 인구도 약 4,660명에서 약 5,100명으로 400명 증가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어업 가구의 감소 또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었고 2006년 큰 증가는 통계 작성 시의 기준 변화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2006년 1,880여 호가 2014

년까지 1,708호로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의 수산업은 1987년까지 크게 성장하였지만 그 후 후퇴 또는 정체되어 약 1,800여 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가 인구는 1990년 4,673명이 1994년 5,527명으로 증가하고 1996년 이후 약 4,0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 다시 4,641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의 어가 인구가 2014년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어업 종사자는 1996년 1,542명이었지만 2000년 2,064명, 2006년 2,421명, 2014년 2,235명으로 어업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전업 어가와 겸업 어가의 변화를 비교하면 1994년까지 전업 어가와 겸업 어가가 각각 509호였으나 1996년 전업 429호, 겸업 629호로 겸업 인구가 증가하였다. 2006년 전업 어가가 976호, 겸업은 907호, 2008년 전업 어가 857호, 겸업 어가가 798호, 2010년 전업 어가 944호, 겸업 어가가 875호, 2014년 각각 887호, 821호로 2004년 이후 전업 인구와 겸업 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2014년 목포 총 어가 가구는 1,708호로 전업 가구는 887호, 겸업 가구는 821호 가구로 전업 인구가 약간 많다. 어가 인구는 4,753명으로 이 가운데 전업 인구가 2,623명, 겸업 인구 2,126명으로 전업 인구가 약 500명 많다. 이 가운데 어업 종사자는 2,235명으로 총 어가 인구의 47%가 어업 종사자였다. 따라서 목포 어업은 전체 어업자 인구의 약 50%가 어선을 소유하지 않는 어업 노동자였다.

표 5 어가 및 어업인구

(단위: 호, 명)

연도	구분	여가			여가인구			어업 종사자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소계	제1종				
1990		2,058				4,673	-	-	
1992		1,059	529	530	312	218	5,527	-	
1994		1,018	509	509	300	209	5,527	-	
1996		1,058	429	629	427	202	3,960	1,562	
1998		1,058	-	-	-	3,956	-	1,544	
2000		1,014	1,014	-	-	4,641	4,659	-	
2002		1,014	1,014	-	-	4,641	4,659	-	
2004		1,014	1,014	-	-	4,659	4,539	-	
2006		1,883	976	907	708	199	5,084	2,796	
2008		1,655	857	798	622	176	4,464	2,455	
2010		1,819	944	875	708	167	4,912	2,717	
2012		1,729	897	832	637	159	4,767	2,630	
2014		1,708	887	821	669	152	4,753	2,126	

자료: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각 연도.

2) 어선 세력

목포의 어선 세력 현황을 <표 6>에서 보면 1980년 동력선 474척, 톤수는 총 11,000t이었다. 무동력 선은 27척, 26t으로 평균 1척당 1t 정도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1982년 동력선은 624척으로 1980년과 비교하면 200척 이상 증가하였고 1986년 897척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1980년과 1988년을 비교하면 어선 척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형 어선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1994년과 1996년을 비교해 보면 20~30t은 19척에서 54척으로, 30~50t은 29척에서 166척으로 증가하였으나 50~100t은 217척에서 57척, 100t 이상은 13척에서 11척으로 정체하였다. 따라서 1995년 전후 30~50t 정도의 어선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50~100t 이하의 어선은 4분의 1로 감소하였고 100t 이상의 어선도 감소하였다. 1997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향으로 원근해어업이 쇠퇴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 어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는 동력선 1,123척, 톤수는 17,616t으로 1980년에 비하여 1척당 평균수가 25t에서 15t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2006년 무동력선이 다시 등장하였고 2010년 이후 대형 어선이 축소하였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1t 미만은 290척에서 284척, 1~5t은 453척에서 565척, 20~30t은 21척에서 53t, 30~50t은 16척에서 44척으로 연근해어선이 증가하였고 근해어업에서는 50~100t 이하는 47척에서 2척으로, 100t 이상은 17척으로 증가하다가 14척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목포에서 어선 증가가 가장 많았던 50~100t 미만의 어업 세력은 1994년 217척이었으나 2014년에는 2척만 남았다. 2014년 이후 목포의 원근해어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선 규모는 1980년대 1~5t 이하의 어선이 전체의 50% 이상이었다. 5t 이상의 어선은 전체 어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5t 미만의 어선 어업이 주요 어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근해 안강망어업이 발달하면서 50~100t 어선은 1994년 200척을 넘어 전체 어선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근해안강망어업이 쇠퇴하면서 50t 이상의 대형어업이 쇠퇴하였고 소규모 5t 미만의 어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 1t 미만은 387척, 1~5t은 388척, 5~10t 105척, 10~20t 23척, 20~30t 20척, 30~50t 7척, 50~100t 188척, 100t 이상은 5척으로 총 1,123척 중 5t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 775척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선 세력 추이는 2014년까지 지속되어 총 동력 어선 1,109척 중 5t 미만이 76%를 차지하게 되었다. 근해 어장 축소로 50~100t 규모의 대규모 어선이 줄어들면서 1~5t 정도의 소규모 어선이 증가하였다. 1~5t 어선은 2000년 388척이었으나 2002년 451척, 2004년 423척, 2010년 453척, 2014년 565척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목포의 어선 세력은 1t 미만의 어선이 전체의 25% 이상, 1~5t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5t 미만의 어선이 전체 어선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목포의 주요 어업은 소규모 상태가 되었다.

1997년 이전 근해 어장으로 대형 어업으로 발전했던 목포가 어장이 축소되면서 75% 이상이 5t 이하의 어선 어장으로 변화하였다.

표 6 어선 세력 현황

연도	구분	총계				(단위: 척)								
		동력		무동력선		1t 미만	1~5t 미만	5~10t 미만	10~20t 미만	20~30t 미만	30~50t 미만	50~100t 미만	100t 이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80		474	10,961	27	26	36	246	32	18	27	54	87	1	
1982		624	12,561	14	12	50	338	34	34	31	54	91	6	
1984		714	15,011	14	39	63	395	34	40	24	33	127	12	
1986		759	15,680	16	15	67	442	26	36	23	32	137	12	
1988		921	17,454	14	15	159	472	46	33	28	30	155	12	
1990		878	16,871	13	13	159	441	41	32	20	30	159	9	
1992		918	20,205	17	52	263	311	66	37	14	35	198	11	
1994		948	21,900	-	-	257	300	79	29	19	29	217	13	
1996		897	22,170	-	-	206	286	97	20	54	166	57	11	
1998		1,139	21,436	-	-	340	383	123	22	41	174	51	5	
2000		1,123	17,616	-	-	387	388	105	23	20	7	188	5	
2002		1,246	16,390	-	-	397	451	176	25	16	23	157	1	
2004		1,206	16,938	-	-	405	423	214	20	24	14	94	12	
2006		1,128	17,572	1	-	394	381	204	14	17	18	86	15	
2008		1,017	17,051	1	-	373	366	188	14	17	19	80	15	
2010		995	15,477	1	-	290	453	138	12	21	16	47	17	
2012		1,059	16,618	2	8	275	524	141	16	19	21	48	17	
2014		1,109	16,014	2	8	284	565	141	16	53	44	2	14	

자료: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각 연도.

3) 수산물 생산과 특징

수산물은 생산량 변동이 심하고 가격 탄력성 계수가 크기 때문에 풍어 시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흉어 시에는 가격이 폭등한다. <표 7>을 보면 수량적 변화와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수산물 어획량을 보면 약 55,426M/T 중 어류는 42,382M/T, 갑각류는 8,836M/T, 연체동물은 4,188M/T, 해조류 15M/T으로 어류가 전체의 76%, 갑각류는 16%이다. 1992년 어획량은 61,365M/T, 어류 45,144M/T, 갑각류 14,976M/T, 연체동물 879M/T, 해조류 46M/T, 기타 320M/T으로 어류가 74%, 갑각류가 24%, 연체류가 1.4%였다. 1992년 위탁 판매량의 순위를 보면 갈치(28.7%), 젓새우(23.3%), 참조

기(7.4%), 병어, 고등어, 꽃게, 복어류, 갑오징어, 아귀, 오징어, 쥐치, 뱀장어 등이다. 갈치와 젓새우는 안강 망으로 많이 잡았으나 조기는 전체 어획량의 7.4%에 불과하였다.

2000년 수산물 어획량을 살펴보면 약 33,874M/T 중 어류는 30,134M/T, 갑각류는 119M/T, 연체동물은 260M/T, 기타 수산물 4,940M/T으로 어류가 전체 어획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동년 어획량을 금액별로 보면 총 어획고는 8억 5,592만 중 어류는 7억 6,393만, 갑각류는 233만, 연체동물 814만으로 총 수산물 어획량의 약 90%가 어류이다.

2014년에는 수산물 총 어획량 31,493M/T 중 어류가 18,459M/T, 갑각류 7,363M/T, 연체동물 203M/T, 해조류 5,365M/T, 패류 1M/T, 기타수산물 102M/T으로 어류가 59%, 갑각류가 23%, 연체동물 0.6% 해조류 17%로 어류가 전체 어획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갑각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어선어업에 의존했던 목포 어업이 다각적인 어업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수산물 어획량

(단위: 만 t, 만 원)

연도	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수산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0	55,426	77,545	42,382	59,284	8,836	11,835	4,188	6,176	15	150	5	100
1992	61,365	115,567	45,144	82,972	14,976	30,144	879	1,478	46	372	320	600
1994	65,814	159,770	56,642	117,694	8,178	40,414	936	1,661	58	700	-	-
1996	47,798	180,134	35,739	110,778	10,369	32,800	1,325	34,761	-	-	249	998
1998	521,548	67,483	30,886	64,045	489,891	524	500	567	209	2,295	62	51
2000	33,874	79,707	30,134	70,620	29,68	67,11	750	2,087	22	289	-	-
2002	28,981	71,288	24,523	63,063	2,845	5,280	1,016	2,328	597	616	-	-
2004	27,360	85,711	21,888	72,854	3,283	77,14	2,052	3,249	137	1,893	-	-
2006	33,163	78,038	26,862	63,210	4,311	10,14	1,327	3,121	663	1,560	-	-
2008	30,956	86,346	26,710	74,653	132	714	181	403	-	-	3,933	10,576
2010	20,507	92,789	20,100	86,708	57	81	350	6,000	-	-	-	-
2012	24,456	118,404	22,088	108,500	330	20,21	20,38	7,874	-	-	-	-
2014	31,493	118,466	18,459	95,662	7,363	14,328	203	915	5,365	7,467	102	90

자료: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각 연도.

4)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

수산물 가공품은 참치통조림이 가장 많다. 2008년 전체 제조 생산량 중 참치통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생산량의 80%, 제조량의 92%, 2014년에는 생산량의 90%, 가격 88%이다. 가공품 종류는 조기,

새우, 갈치, 복어, 갑오징어 등으로 특별히 가공하지 않는 원형 동결형태이다.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구조의 변화로 고차 가공품에 대한 수요 증대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참치 통조림과 다양한 수산물이 가공품으로 제조되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

(단위: 만 t, 만 원)

구분	2008		2010		2012		201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11,970	75,357	10,752	68,027	14,017	60,814	9,973	86,890
새우(염새우)	15	64	53	126	103	340	150	400
참치(통조림)	9,741	69,540	9,869	62,289	13,305	53,676	9,043	77,041
고등어(원형동결)	1,004	1,012	-	-	-	-	1	4
조기(원형동결)	460	1,484	29	270	88	692	11	236
새우(원형동결)	-	-	-	-	-	-	-	-
갈치(원형동결)	112	877	9	13	6	61	-	-
복어(원형동결)	-	-	-	-	-	-	-	-
명태(원형동결)	50	75	-	-	-	-	-	-
병어(원형동결)	25	259	2	52	8	198	-	-
기타(원형동결)	343	343	20	140	-	-	-	-
갑오징어(처리동결)	-	-	-	-	-	-	-	-
연육(처리동결)	-	-	-	-	-	-	-	-
기타(처리동결)	-	-	-	-	-	-	-	-
김(해조제품)	-	-	120	1,570	-	-	34	168
건미역(해조제품)	199	1,682	112	1,266	201	1,788	122	1,548
염장미역(해조제품)	21	21	6	12	-	-	26	29
다시마(염장미역)	-	-	6	12	-	-	-	-
톳(해조제품)	-	-	-	-	-	-	-	-
기타(해조제품)	389	510	-	-	-	-	139	268
기타(조미기공품)	-	-	137	1,767	306	4,059	-	-
조미주치포(조미기공품)	-	-	-	-	-	-	-	-

자료: 목포시,『목포통계연보』, 각 연도.

5) 목포 어업의 허가 건수

목포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은 안강망이었다. 1962년 어업 허가 상황을 보면 안강망어업이 87건, 자망 어업이 9건이었다. 1992년 근해 어업 허가 상황을 보면 근해안강망어업 180건, 근해통발어업 85건, 근해

유자망어업 45건, 근해채낚기어업 46건, 근해연승어업 22건이다. 총 378건 중 근해안강망어업이 전체의 48%, 통발어업이 22%, 근해자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이 각각 12%, 근해연승어업 6%이다. 안강망이 전체 어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요어업이다.

근해안강망은 보통 80t 이상의 대형 어선에 10~20명이 승선하여 어망 3층을 사용하는 대형 어업이다. 이 어업은 1980년 안강망 개량 작업으로 수해와 암해의 전개 장치 개발로 어구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근해안강망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갈치였고 이 외에도 병어, 갑오징어, 강달이, 참조기였다. 1970년대에는 쥐치가 많이 잡혔다(〈표 9〉 참조).

연안안강망에서는 젓새우가 가장 많이 잡혔다. 2014년 총 어선수 145척 중 근해안강망은 44척, 근해자망어업 60척, 근해연승어업 22척으로 각각 30%, 41%, 15%를 차지하여 근해안강망과 자망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목포에서 많이 어획된 갈치와 젓새우는 근해안강망과 연안안강망으로 잡은 것이다.

표 9 근해 어업 허가 현황

연도	합계	문어단지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2007	156	-	2	37	4	72	17	21
2008	143	1	9	50	1	53	9	20
2009	149	1	14	60	1	48	6	19
2010	123	-	12	48	1	42	4	16
2011	133	-	10	53	1	44	7	18
2012	130	-	9	52	1	47	4	17
2013	134	-	10	51	1	48	5	19
2014	145	-	12	60	1	44	6	22

자료: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각 연도.

연안 어업은 10t 미만의 어선으로 자망, 안강망, 선망, 복합, 통발, 양조망어선이다. 연안 어업 중 복합 어업은 2007년 1,031척 중 671척으로 전체의 65%, 2014년 총 967척 중 653척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 1,031척 중 자망은 241척(23%), 안강망 38척(3.7%), 복합 671척(65%), 통발 78척(7.6%), 양조망 3척이었다. 2014년 967척 중 자망은 205척(21%), 안강망은 48척(5%), 복합어업 653척(68%), 통발 60척(6%)으로 연근해 안강망어업이 증가하고 있었다(〈표 10〉참조).

표 10 연안 어업 허가 처분 건수(10t 미만)

	합계	자망	안강망	선망	복합	통발	양조망
2007	1,031	241	38		671	78	3
2008	987	234	38		639	71	5
2009	906	201	36		591	75	5
2010	915	191	40	1	614	69	
2011	933	191	44	—	629	69	—
2012	960	208	45	—	641	66	—
2013	933	191	44	—	629	69	—
2014	967	205	48	1	653	60	—

자료: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각 연도.

2. 현대의 수산단체

1) 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서구 지역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업종별 어업협동조합, 수 산제조업협동조합과 이를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 합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 에 지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부회가 각 도마다 설치되었다. 경기도지 부, 충청남도지부, 경상남도지부, 경상북도지부, 강원도지부, 제주도지부와 함께 전라남도에는 서구지부, 동구지부 2개의 지부가 설립되었다. 1966년 6월 전라남도 서구지부 소속 어업협동조합은 금당·약산·흑 산·강진·무안·금일·목포·신지·송지·노화·청산·완도·우수영·진도·소안·영광·고금·군외·북평·조 도어업협동조합 등 20개이다. 따라서 목포는 전라남도 서구지부에 포함된다.

1973년 전라남도 서구가 전라남도지부로 통합됨에 따라 목포는 전라남도지부로 변경되었다. 1973년 8 월 28일에 개최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차 이사회에서 전라남도 서구와 동구 통합의 실제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2) 목포어업조합과 목포수산업협동조합

1937년에 설립된 목포어업조합은 해방 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해방 직후 1947년 도별 어업

조합수를 보면 전라남도 44개소, 경상남도 33개소, 황해도 14개소, 경기도 13개소, 충청도 13개소, 경상북도 13개소, 강원도 10개소, 전라북도 5개소, 제주도 3개소로 총 138개소 중 전라남도 소재 어업조합은 32%를 차지하였다. 한국수산업회『수산월보』(1949)에 따르면 목포어업조합은 순이익이 803,000엔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6번째로 많고 차입금은 11,508,000엔으로 나로도어업조합 다음으로 많으며 대부금도 1,581,000엔으로 5번째로 많았다. 위탁판매 실적도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한다.

1961년 6월 8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이전 해무청은 수산단체를 정비해 폐합할 것을 발표하였다. 해방 이후 적자 상태의 어업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조합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무청이 발표한 「수산업단체정비폐합요강」에 따르면 첫째, 설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과거 정치적으로 설립된 곳, 둘째, 현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조합 및 실제 휴무 상태에 있는 조합, 셋째, 1959년과 1960년도 위탁판매액이 1억 4천만 원에 미달하는 조합 및 사업이 부진하여 재정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조합이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 폐합요강에 따라 전라남도 어업조합 총 50개소 중 22개소가 폐합되어 28개소만 남게 되었다.

통합 또는 폐소된 어업조합은 목포어업조합, 완도어업조합, 군외어업조합, 고금어업조합, 금일어업조합, 금당어업조합, 노화어업조합, 강진어업조합, 평북어업조합, 송지어업조합, 우수영어업조합, 진도어업조합, 조도어업조합, 흑산도어업조합, 영광어업조합, 여수어업조합, 돌산어업조합, 안도어업조합, 거문도어업조합, 벌교어업조합, 옥정어업조합, 나로도어업조합, 광양어업조합, 장흥어업조합, 풍화어업조합, 금산어업조합, 녹동어업조합, 해창완어업조합이었다.

1961년 단행된 수산단체의 통합 조치에 따라 목포 관내에서는 1961년 7월 1일자로 낙월도, 영산강, 영암, 무안 및 임자어업조합 등 5개 어업조합을 폐합하고 이를 목포어업조합으로 통합·흡수하였다. 따라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등 4개 시군의 어업조합과 흑산도어업조합도 축소 조정되었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4월 1일 시행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어업협동조합·업종별어업협동조합·수산제조업협동조합 정관례와 수산업협동조합 재무 기준이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구 수산단체의 수협으로의 개편 및 조합 재산과 기능 이관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수협법」과 각종 지침에 따라 목포어업협동조합에서는 초대 임원으로서 조합장 이홍기(李洪琪), 이사 박충은(朴忠銀)·김상관(金相寬)·오중동(吳中童)·김인철(金仁哲)·정남계(丁南桂)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감사에 박판섭(朴判燮)과 송영종(宋永種)이 임명되었고 동년 4월 1일에는 목포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목포어업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목포어업협동조합 제정 정관

제1장(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목포어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어업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역) 본조합의 구역은 목포시, 무안군 봉탄면 삼향면 일로면 이로면 압해면 청계면 망운면 해제면 현경면 지도면 임자면 암태면 비금면 안좌면 자은면 하의면 장산면 도초면, 영암군 군서면 덕진면 도포면 시종면 삼호면 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나주군 동강면 송산면 왕곡면 다시면 영산포읍,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송이리, 각이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조합의 사무소는 목포시 금화동 4번지의 2에 둔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본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도보호사업

- 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 나. 어업기술자 양성
- 다. 어업분쟁의 화해
- 라. 어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시책건의

2. 구매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및 분배

3. 조합원의 어획물 기타물의 운반가공 보관판매사업

4. 신용사업

- 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전대
- 다. 조합원의 자금차입알선
- 라.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의 수입
- 마. 자금의 사후관리

5. 공제사업

- 가. 공제기금 조성
- 나. 선원공제
- 다. 어선공제
- 라. 어구공제

마. 농림부장관의 승인 얻은 공제

6. 이용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기구, 차량, 창고, 가공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7. 후생복지시설

8. 정부사업의 대행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 단체협약의 체결

10. 기타부대사업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본조합의 임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는 일절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본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선거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제8조(공고방법) ① 본조합의 공고는 본조합의 계시판(지소계시판을 포함한다)에 이를 게시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전남일보 또는 목포일보에 게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시는 7일 이전으로 한다.

제9조(통지 또는 최고(催告)방법) ① 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단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규약)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총회 또는 총대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사무의 집행과 경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직원에 관한 사항

6. 직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의 정관 3조에 의하면 업무구역은 목포시와 무안군 봉탄면·삼향면·일로면·이로면·압해면·청계면·망운면·해제면·현경면·지도면·임자면·암태면·비금면·안좌면·자은면·하의면·장산면·도초면의 18개면, 영암군은 군서면·덕진면·도포면·시종면 삼호면·미암면·학산면·서호면 8개 면, 나주군은 동강면·송산면·왕곡면·다시면·영상포읍 5개 면, 그리고 영광군은 낙월면 상낙월리·하낙월리·송이리·각이리 4개리이다. 어업조합 주소지는 목포시 금화동 4번지 2였다.

정관 2조의 목포어업협동조합 목적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

키고 어업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관 5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지도 보호 사업으로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어업기술자 양성, 어업분쟁의 화해, 어업에 관한 조사 어업분쟁의 화해, 어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시책건의를 수행한다.

둘째, 구매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의 필요한 물자 구입, 운반 및 분배를 통해 조합원에게 유익을 준다.

셋째, 조합원의 어획물 그 밖의 운반 가공 보관 판매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신용사업으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또는 전대, 조합원의 자금 차입 알선,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 수입, 자금의 사후관리 등 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운용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지원한다.

다섯째, 공제 사업으로서 공제 기금의 조성, 선원, 어선, 어구 공제 및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공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불의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지원한다.

여섯째, 이용 사업으로 창고 가공시설 및 그 밖의 공동시설을 갖추어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를 지원한다.

일곱째, 조합원의 이용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기구, 차량, 창고 가공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을 조합원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기타 사업으로는 조합원들의 후생 복리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정부업무의 대행 보조사업, 단체 협약의 체결 사업을 실시하였다.

목포어협은 조합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상무, 상무 밑에 총무계, 사업계, 지도계, 제빙계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어촌계를 부설하였다. 어촌계는 조합 정관 제2장에 의해 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어촌계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어업협동조합이 발족함과 동시에 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3) 어촌계

어촌계는 1962년 3월 1일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설립되었다.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리, 동조합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의 협동조직체이다. 어촌계원의 자격은 어촌계

의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으로 어촌계원은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한다. 어촌계원은 주로 해태, 미역, 파래, 잉어, 낙지, 활어, 갯지렁이, 석화, 피조개, 바지락, 고막 등을 생산하였다.

1975년 목포시, 나주군, 영암군 어촌계는 각각 5개, 2개, 4개로 총 11개였으나 1981년 무안수협과 함평수협을 합병한 후 1994년 46개로 증가하였다. 1980년까지 어촌계 변화 추이를 보면 1976년 13개 어촌계, 1978년 12개 어촌계가 설립되었으나 1980대에 들어와 무안군 수협과 함평군 수협을 흡수한 이후 어촌계 수가 대폭 늘어났다. 합병 당시 무안군 수협 소속 어촌계 21개와 함평군 수협 소속 5개 총 26개의 어촌계를 흡수하자 기존 12개의 어촌계가 38개 어촌계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조합원수도 증가하여 1980년 800여 명에 불과하던 조합원수가 1981년 2,62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3,34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 38개 어촌계는 변동이 없었으나 1989년에 들어와 41개 어촌계로 증가하였다. 1990년 42개, 1991 43개, 1992년 45개, 1994년 46개 어촌계가 설립되었다. 목포에 있는 어촌계는 다음과 같다.

삼호어촌계, 죽교어촌계, 달리어촌계, 서산어촌계, 놀도어촌계, 허사어촌계, 옥정어촌계, 장동어촌계, 신학어촌계, 해창어촌계, 성재어촌계, 호포어촌계, 창매어촌계, 송석어촌계, 용묘어촌계, 서북어촌계, 곡지어촌계, 월두어촌계, 동산어촌계, 해운어촌계, 신월어촌계, 원동어촌계, 동암어촌계, 하묘어촌계, 송현어촌계, 성동어촌계, 장재어촌계, 목서어촌계, 압창어촌계, 구로어촌계, 복길어촌계, 청호어촌계, 마동어촌계, 석두어촌계, 주포어촌계, 월천어촌계, 석창어촌계, 학산어촌계, 광산어촌계, 내동어촌계, 탄도어촌계, 가입어촌계, 만풍어촌계, 도대어촌계, 대반어촌계, 성내어촌계

2009년 조합수는 50개, 조합원수는 2,680명이다. 조합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2010년 2,701명, 2012년 2,785명, 2014년 2,961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개의 조합이 증설되어 51개 조합이 되었다.

4) 남해수산연구소 목포분소

(1) 연혁과 목포분소

일제 강점기 총독부수산시험장 지장(支場)으로 설립된 목포지장은 해방 후 1949년 4월 26일 대통령령 제79호 전문 11조와 부칙에 의해 중앙수산시험장 직제로 새로이 개편 출범하였다. 목포지장은 인천지장, 군산지장, 여수지장, 주문진지장, 포항지장과 함께 설립되었고 양어장은 청평·진해에 설립되었다. 목포지

장의 관할구역은 전라남도(광양군, 여수시, 여천군, 순천시, 승주군, 보성군, 고흥군 제외)와 제주도였다.

1961년 5월 9일 중앙수산시험장 직제가 대폭 개정되었다. 농림부령 제96호에 따라 새로이 동해구 지장, 남해구 지장, 서해구 지장으로 통합되었다. 동해구 지장은 강원도와 경상도, 남해구 지장은 전라남도, 서남해구 지장은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목포지장은 남해구 지장으로 통합되었고, 제주도는 제주분장(分場)으로 분리되었다.

1963년 12월 16일 각령(閣令) 제1708호 국립수산진흥원 직제 공포로 중앙수산시험장은 국립수산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각 해구 시험장에 시험소와 담수 시험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남해구 지장은 남해구 시험소로 명칭 변경되었고, 남해구 시험소는 전라남도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목포시에 주소를 두었다.

1971년 8월 13일 대통령 제5750호로 국립수산진흥원 직제 개정령이 공포되어 종전의 시험소가 지원(支院)으로 개편되었다. 인천·주문진·군산·포항·목포·제주 6개 지원이 설립되었고 동년 9월 농림부령 제462호에 의해 목포지원 내에서 여수분원(分院)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1985년 4월 26일 대통령령 제11691호에 의하여 국립수산진흥원 직제가 개정되어 지원은 9개의 수산연구소로 개편되었다. 목포지원은 목포수산연구소로 변경되었다. 1993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13836호에 의하여 종전의 9개의 수산연구소(인천·주문진·대천·군산·목포·여수·포항·충무·제주)가 통폐합되어 3개의 수산연구소, 즉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개편되었다. 개편 이유는 9개의 수산연구소가 분산 설치됨에 따라 연구 인력 및 기구 분산으로 행정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해수산연구소는 기존에 설치된 목포·여수·충무·제주수산연구소가 통합되어 여수시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충무에는 충무분소, 제주도에는 제주분소가 설치되었고 목포수산연구소는 폐소되었다.

1995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14605호에 의하여 국립수산진흥원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남해수산연구소 안에 목포분소(分所)가 설치되었다. 목포분소는 비록 분소였지만 수산시험기관이다. 주소는 목포시 항동 6번지, 시설은 연구동 196평, 인원은 소장 이하 서무 2명, 수산연구사 5명으로 주요 사업은 패조류 품종 개량시험에 속하는 미역 우량종 선발육성 시험과 김 품종 개량 및 종 보존 보급 등이다.

(2) 남해수산연구소 목포어촌지도소

19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10552호 「국립수산진흥원 내수면연구분소, 수산종묘배양장 및 어촌지도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내 어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1981년 12월 31일 농수산부령 제10644호에 따라 속초어촌지도소, 동해어촌지도소, 서산어촌지도소, 부안어촌지도소, 완도어촌지도소, 영일어촌지도소, 울릉어촌지도소, 남해어촌지도소의 8개 어촌지도소가 신설되었다. 이후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1호에 의해 5개의 어촌지도소가 증설되는 가운데

목포어촌지도소가 설립되었다. 목포어촌지도소의 위치는 목포시,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나주군으로 되었다. 목포어촌지도소는 남해수산연구소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새로운 과학 어업 기술 보급,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어업 질서 확립, 적조 또는 병해 재해 예방 지도, 수산시책 및 기술 홍보 사업이다.

(3) 중앙수산검사소 목포지소

1948년 6월 8일 대통령령 제130호 농공부 소속 중앙수산검사소 설치 규정으로 중앙수산검사소가 설치되었다. 동 검사소는 소장 아래에 총무과, 검사과, 조사과 3과를 두고 목포지소를 비롯하여 16개의 지소를 두었다. 그러나 1963년 9월 3일 각령(閣令) 제1491호와 동년 동월 27일 농림부령 제142호에 의해 인천, 여수, 제주, 부산, 포항, Mukho 6개의 지소로 축소되면서 목포지소는 여수지소로 흡수되었다. 여수지소 산하에는 목포출장소와 완도출장소가 있었는데, 1967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3109호에 의해 목포출장소는 지소로 승격되었다. 19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10551호에 의해 중앙수산검사소가 국립수산물검사소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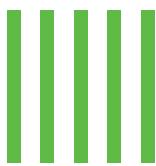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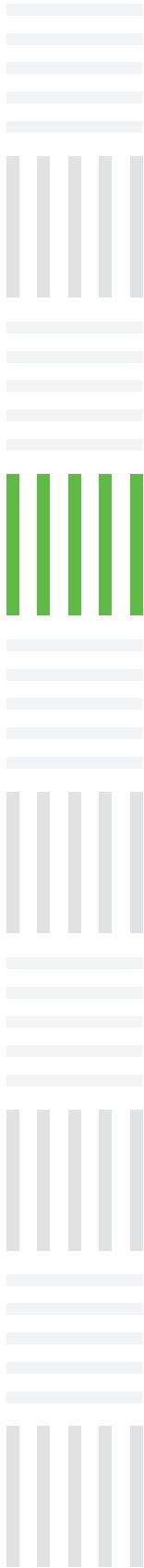
중앙수산검사소 목포지소는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 수산물제품의 생산지도, 수산물검사 준비에 관한 검사 분석, 외화획득 원료 수입 및 사후 관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한다. 관할 구역은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 3개 시와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진도군 8개 군이다.

김수희 | (재)독도재단 교육홍보부장



제4편

목포의 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장 서론

우리 속담 중에 ‘자식은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성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 삶의 성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간구성의 경제력일 것이다. 사람이 경쟁력 있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어있는 곳이 서울이라면 망아지가 경쟁력 있게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은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간구성을 이루는 기반은 시장이고,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경제력의 핵심원천이며 생산의 주체로서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인구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인적자원의 양적 인 측면뿐 아니라, 그 지역의 삶의 질, 문화 수준 등 질적 측면에서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 지역의 인구 이동은 지역 내 산업구조, 즉 기업의 구조 및 분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에 결정적 흐름을 제공한다.

금년은 이 땅에 기업이라는 이름의 상업조직[大同商會, 1883]이 생겨난 지 134년이 되는 해이자 근대적 산업자본기업[京城紡織, 1923]이 태어난 지 94년이 되는 해이며 목포항이 개항한 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시점에서 목포 기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돌아켜보면 목포라는 지역의 역사는 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주체인 지역기업의 연원을 찾아 설립배경과 각 시대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성장 발전해왔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역 기업이 어떻게 미래에 대처하면 좋을까를 경영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세기 초부터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며 무역하던 외국 상선들은 조선의 강력한 쇄국정책(鎖國政策)에도 온갖 구실을 붙여 통상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방편으로 조일통상조약(朝日通商條約)을 강행하였다.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일명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라 불리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개항장 내에

일본인 조계지(租界地)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 범법자의 경우 일본영사가 일본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등의 개항장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허용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조약의 성립으로 부산·원산·인천이 개항되고, 목포에는 일본인이 들어와 토지를 점령하였으며 1897년에 목포항이 개항했다. 목포에 6개국의 공동거류지가 설정됨으로써 목포가 근대화 초기 시절부터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진 7개국의 다국적 도시였던 셈이다. 현재 목포문화원에서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일대의 구도심 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계획화 된 1백년 도시의 틀을 갖췄던 것이다.

그 후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재건기 및 경제개발계획단계의 발전기를 거쳐 개방화 시기까지 목포 기업의 형성과 발전, 쇠퇴, 그리고 재도약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지역에서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자리수와 산업 생산액 증가 등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취업자수, 생산액, GRDP,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체수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 지역에서의 기업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해당 지역의 산업생산액의 GRDP에 대한 기여도)는 14.8%인 반면 하위 지역에서의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6.4%에 그쳐 기업 증가율이 높은 상위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업이 크게 기여함을 나타내고 있다.⁰¹⁾ 즉 기업의 증가가 지역 산업 생산을 늘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을 의미한다. 기업이 지역 경제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기업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목포 기업의 대략적인 역사와 특징, 그러한 기업을 키워온 경영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지역경제의 지표를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목포 개항 120년의 역사는 바로 지역 기업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개항 이후 이곳에 터를 잡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번영하면서 개항 120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종업원 없이 단독으로 시작한 주막이 객주, 정미소, 조면 공장, 고무공장, 주조장 그리고 근대 및 현대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역 기업은 주민 생활의 안정화와 지방 재정의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지방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지방은 지역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여 지역 기업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자기 고향을 지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창의성, ‘보스’ 기질, 위험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과 강한 애향심 등은 지역개발의 중요한 동인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목포 기업 역사’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목포항 개항기부터 최근까지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목포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기업들의

01)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003.

부침(浮沈)과 활동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운수, 서비스 그리고 농업 및 수산업 부문 까지도 정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규모나 업종보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목포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알아보고 몰락한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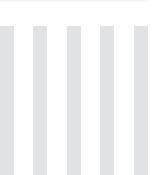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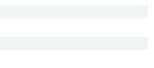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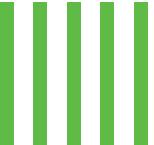
둘째, 산업별로 역사성, 주력산업 등을 시대별로 정리했다. 초기의 조면, 미곡, 양조, 염업, 고무, 요업, 어망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객주에서 운송, 보관 및 영업, 금융, 요식업, 극장 그리고 관광 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발전의 축이 되는 산업들을 살펴봤다.

셋째, 기업들과 함께 개항 이후 대표적인 지역 기업인들을 소개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창업 기업인의 자질은 중요하다. 때로는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기업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가 방만한 부채 경영과 결합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을 가져온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역 기업은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 경우도 많았다. 철저한 사내 검증, 혹독한 경영자 수업, 창업자는 권리가 아닌 책임, 특별대우 불인정이라는 경영 습계 원칙이 없는 한 2세 경영자의 잘못된 경영 관리 능력을 바로잡을 순 없다. 그 외에 노조와의 대립, 지역커뮤니티와의 대립, 그리고 정치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가끔 있었다. 그런가하면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기업들도 있었다.

목포 개항 120년의 역사는 바로 향토기업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개항 이후 이곳에 터를 잡아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번영하면서 개항 120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종업원 없이 단독으로 시작한 식당에서, 객주, 정미소, 고무공장, 주조장 그리고 근대 및 현대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못하고 뒤안길로 사라진 여러 기업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기본 자료는 『목포부사』, 『목포시사』, 그리고 당시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근·현대 목포 기업의 전개과정은 크게 ① 개항 이후, ② 광복 및 6·25 전쟁 전·후, ③ 1960~1970년대 경제개발기, ④ 발전기(1988년 이후)의 4단계로 분류했다.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절 목포상객주회와 무안사상회사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2절 외국인 상인의 등장과 목포상업회의소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3절 개항 직후 목포의 근대 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2장 개항 이후

제1절 목포상객주회와 무안사상회사

목포에 근대적 형태의 기업이 나타난 때는 언제일까. 목포가 개항한 것은 1897년 10월 1일로서 인천보다는 15년 뒤졌지만 부산과 인천 다음으로 빨랐다. 최초의 근대적 형태의 기업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조선 말의 객주(客主)이다. 주된 업무는 위탁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간접 매매하고 그 대가로 구전을 받는 위탁 매매업이다. 부수 업무로는 위탁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숙박을 제공하는 여숙업무, 화물을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에게 대해 대금입체(貸金立替)·자금 제공 등의 금융 편의를 위한 금융업무, 각종 물화(物貨)를 무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업무, 그리고 화물 운반을 위한 마차나 마방(馬房), 또는 선박을 알선하는 수송업무를 하였다. 보통 객주라 하면 물산객주(物產客主) 또는 물상객주(物商客主)라 하였다. 물산 객주는 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일신상 사무까지 돋는 후견인과 같은 지위를 가졌는데, 물산객주와 위탁자의 이러한 관계는 보통 여러 대까지 이어졌다. 객주의 기원이나 연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객주의 일종이던 경주인(京主人) 또는 원우제(院宇制)가 고려 시대의 문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8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도 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상회, 회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상업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883년부터는 대동상회(大同商會), 장통회사(長通會社) 등 개인 기업 이외에도 인천의 신상회사(紳商會社)와 같은 동업자 조합과 연무국(烟務國)과 같은 관설(官設)적 특권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합자회사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생겼다. 1905년 박승지에 의해 동대문 시장 관리회사인 광장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06년에는 한국인 기업가들로 구성된 최초의 경영인 단체 한성상업회의소가 설립되어 목포 개항 이전 조합 및 특권회사 외 근대적 회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객주는 본래 조선 후기부터 있었던 상인들로서 이들은 현지의 상인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상인들 사이에 개재하여 매매를 주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선주인(船主人)이라고 불리기

도 하였다. 목포가 개항이 되자 각지에서 객주 상인들이 몰려들었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부산항의 객주들이 목포로 옮겨온 경우가 많았다.⁰¹⁾ 본래 객주는 아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독점하기 위해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리 또한 재물을 요구하며 마침내는 관리의 면허가 없으면 객주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목포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개항 이후에 곧바로 형성되어 약 70명 정도의 객주들이 있었고, 무안감리서의 인허 없이는 증원이 불가능하였다. 목포항이 개항된 다음 해인 1898년에 목포상객주회가 조직된다. 상객주회는 당시 조선인 객주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1901년경부터는 무안사상회사라고 명칭을 바꾼다. 이 무안사상회사는 조선 궁내부의 내장원에 소속되어 내장원에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특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1904년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무안사상회사장정」이 아직 남아있다. 「무안사상회사장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⁰²⁾

무안사상회사 장정

1. 본사 명칭은 사상회사라 인허하고 도장을 출급하여 증거로 삼도록 함.
1. 본사의 사장(社長)은 내장원경이 겸하고, 부사장은 본항 감리가 겸하며, 총무는 내장원 주사가 겸하고 부총무는 본항 경무로 겸하게 함.
1. 본사 회장(會長)은 매년 정월로 교체하되 사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이를 본원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아 거행하며, 부회장 및 의원은 사원 중 상무(商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이로서 정하고, 사무(事務)는 회장이 택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신하고, 부회장과 의원도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 이하 의원은 중임이 가능하다.
1. 본사에 만약 중대한 일이 있으면 본사 회장이 회의를 열어 협의하여 내장원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려 조처할 것.
1. 상무 상에 관계된 일은 사장과 회장이 협의 조처할 것.
1. 본항 모군(募軍) 등은 본사에서 조직할 것.
1. 신입하여 개업하려는 자는 찬성금 2백 원을 본사에 내고 본사에 와서 장정과 빙첩(憑帖)을 받은 연후에 개업케 할 것.
1. 객주 영업세를 매년 6백 원씩 2차례로 나누어 음력 3월과 10월에 각각 3백 원씩 상납하되, 상납할 시에는 본사에서 내장원에 직접 상납할 것.

01) 전라도는 조선 각도 중 옛날부터 이름난 보고(寶庫)였으니 목포 개항 이전 본도에 있어서의 물자의 수급관계를 살펴 보건대 남쪽, 즉 지금의 남도 지방은 주로 부산의 상권에 들어있어 다도해의 수산물을 물론 영산강 유역의 나주군 영산포와 석해, 영암군의 도포와 덕진포, 진도군의 벽파정, 해남군의 우수영 지방은 이미 부산 지방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왕래가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배를 지어 곡류를 부산에 보내고 철물과 포목, 석유, 성냥 등 여러 가지 잡화를 부산에서 구하여 썼다고 알려지고 있다(조경만, 「개항 이후 목포의 공간 변화와 문화과정」, 『인천학연구』10,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9, 7~42쪽).

02) 박찬승, 「개항직후 목포의 경제」,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40~141쪽.

1. 사원 중에 혹 상납을 빙자하고 객상에게 구문을 가봉(加捧)하면 가봉한 구문의 배를 물려서 원금은 되돌려 주고 나머지 원금과 같은 액수는 본사에 내게 하며, 혹시 객상이 구문을 내지 않기 위하여 몰래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내외 구문을 2배로 받되 만일 이를 거절하는 경우 본항 총무장에게 보고하여 징봉케 할 것.

이들 상객주회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관변조직으로 관청에 공동으로 경비 지원 등의 세금을 내고 대신 영업 특권을 누렸다. 이런 점에서 객주조합 형태의 목포상객주회가 아직 근대적 형태의 회사 조직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개항 직후 일본 상인의 경우도 행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항 직전인 1897년 6월에 이미 목포에 사무실을 열었던 계림장업단(鶴林獎業團)은 바로 이들 행상의 조직이었는데 주로 금건·석유·성냥·명태 등을 팔고, 미곡·해조류·기타 물산을 매집하였다. 그 거래는 주로 엽전으로 이루어졌는데, 미곡의 매집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요하였기 때문에 수입품을 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 현지의 객주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미곡 매입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교역을 거류지 무역이라 하며 일본인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무역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때 거류지의 일본 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지주)들을 연결해 준 사람들이 객주들이다. 즉 중개무역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값싼 면제품을 팔고 우리나라 농민, 지주들은 곡식(쌀)을 팔았던 교역을 미면교환체제(米綿交換體制)라 한다. 이러한 객주는 문호 개방 이전에는 포구와 같은 교통 중심지에 있었지만, 개항 뒤에는 각 개항장에도 생겨났다. 개항장 객주는 내외국 상인들의 위탁 판매를 통해 매매 쌍방으로부터 구문(口文)을 받는 한편, 어음의 인수와 할인을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들은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초기 외국 무역의 담당자가 되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개항지에 객주회, 박람회를 조직하여 길드(guild)적인 동업 조합의 기능을 발휘하며 원산상회소(元山商會所, 1883), 의신상회소(義信商會所, 1884), 순신창상회(順信昌商會, 1884) 등 상회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정부의 비호와 보호를 받고 수세청부(收稅請負)를 맡는 등 개항장 거래에서 매매 주선권을 보장받는 특권적 상인으로 성장해 갔다.

1890년대 이후 외국 상인들의 개항장 밖 내륙 지방 행상이 본격화하면서 객주상회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즉 정해진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와 일본 상인 등은 중개무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역할 수 있게 되어 객주와 여각, 보부상 등이 손해를 봤다. 1899년에 정부는 영업 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보완하려고 인천·부산항 등지에 자본력이 강한 객주 25개소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상품 매매 독점 주선권을 주어 보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상권보호책은 일본 상인의 반발로 무너지면서 차차 그들의 금융 지배 아래 예속되어갔다. 객주상회소와 같은 상인단체들은 특히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상인이 각 지방에 정주함에 따라 급속히 식민지적 유통기구로 편성되어 갔다. 그 뒤 객주는 외세의 압력으로 관허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 부족, 과중한 납세 의무 등으로 돌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1930년 일제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 당시 목포상객주회 및 무안사상회사는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조직과 운영 기능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능을 지닌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정부의 한 부서나 부속기관 성격을 가지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권과 민간인 통제권을 가지는 등 특권 단체의 역할을 맡고 있던 것이다.⁰³⁾

제2절 외국인 상인의 등장과 목포상업회의소

1. 외국인 상인

개항과 함께 목포에 들어온 외국 상인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일본 상인들이었으며, 그 외에 청나라 상인과 기타 외국인 상인들이 간헐적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인 상인들은 목포 개항 직전부터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일본인 상인층 가운데 목포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들은 계림장업단의 행상들이었다. 계림장업단은 1897년 6월에 목포 개항장에 터전을 마련하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일본 행상들은 옥양목, 석유, 성냥, 명태 등을 한국인들에게 팔고 현지에서 쌀, 해조류 등 기타 물산을 사들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당시 거래는 거의 엽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본 행상들은 수입품을 현지로 가지고 들어가 그곳 도매상에게 수입품을 넘긴 대신 현지 생활품과 맞교환하는 형태로 장사를 하였다. 행상들은 현지에 머물면서 곡식이나 기타 물산이 상당량 모이면 목선을 이용해 목포로 이송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 행상들이 매집한 쌀과 기타 생산물은 그 양이 적어 쌀 200가마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10일에서 20여 일을 머물러야 했다. 당시 통신 역시 발달하지 못해 쌀의 시세를 제 때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상들은 의외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였다.⁰⁴⁾ 이후 개항이 되자 일본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목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했던 업종은 무역상, 집화상, 소매상 등 세 부류였다. 개항 초기인 1899년 5월 일본 상인들은 수출 무역품을 중심으로 한 목포상화회와 수입 무역상으로 조직된 집화상조합, 일용품 판매업자로 이루어진 소매상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었다.⁰⁵⁾

03) 김태현, 『부산기업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4, 24~25쪽.

04) 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 314쪽.

05) 같은 책, 122쪽.

개항 이후 목포 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은 일본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1900년에 목포상업회의소를 조직하였다. 주로 당시 진출해 있던 은행관계자 및 일본 상인이 중심이 되어 목포상업회의소 창립을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단체는 목포상화회 2명, 잡화상조합 3명, 소매상조합 2명 등이었다. 목포상업회의소의 주요사업은 ① 상업의 발달 이익의 증진을 기도하는 일, ② 상업에 관한 일체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관청에 품신하는 일, ③ 상업의 실황과 그 통계를 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지 상업회의소와 왕복 통신하는 일, ⑤ 관청의 위임에 따라 상업에 관한 공설의 시설물이나 그 영업소를 관리하는 일, ⑥ 중개인의 자격원 수수료를 심사 결정하고 중개인과 모든 상조합을 감독하는 일, ⑦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업에 관한 분쟁의 중재를 하는 일 등이었다.⁰⁶⁾

한편, 기타 외국 상인층 가운데 자료로 확인되는 상인층은 청국 상인들이다. 청나라 상인들은 1898년 지구공매에 참가하면서 목포 상인층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1898년 4월 목포 거류지의 지구 공매가 집행될 당시 중국인 의성생(義盛生)이 인천에 가서 지구공매에 참가하였다. 당시 무안감리 진상언은 중국인의 공매 참가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일본 영사에게 통보하였다. 개항지를 공매한 의성생은 9월경 가옥을 건축하고 영업을 실시하였다. 의성생 이외에도 화풍성(和豐誠)이라는 중국 상인이 일본인 가옥을 빌려 개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천에서 유지로 소문난 사송부(史松富), 동순태(同順泰) 등도 잇따라 지구의 매립에 착수하여 일본인 상인과 경쟁구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한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인 상인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 목포상업회의소

같은 시기 목포의 일본인 수출 무역 상인들은 목포상화회를 만들었고, 수입 무역 상인들은 잡화상조합, 일용품 판매업자들은 소매상조합 등을 만들었다. 이 3개의 단체가 1899년 7월 상업회의소 창립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렇게 만든 단체가 '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인데 1916년 조선인단체인 무안사상회사와 일본인단체인 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가 통합하게 된다.

최초 일본인 중심의 상업회의소의 조직을 보면 거의 일본 상업회의소의 조례에 따랐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 명칭에 '일본인'이라 표현해서 외국에 있는 일본 상인의 단체임을 표시했고 일본 상법 제4조에 규정한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즉 목포항의 상업자 전부를 회원으로 하고 경비를 부담시킴과 동시에 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초대 회장으로는 당시 제일은행 출장소 주임이었던 와카마쓰 도사부로[西川一太郎]가 맡는데 이 사람은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창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06) 같은 책, 122~123쪽.

1910년 8월 한일합병이 되자 같은 해 9월 15일 정관을 개정해 정관 중 ‘일본인’이라는 문자를 삭제하고 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를 목포상업회의소로 바꾸었다.

목포상업회의소의 역사는 서울(당시 경성), 인천,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조직된 상업회의소라는 점에서 목포 개항 12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 시기까지의 상업회의소의 대표적 특징은 당시 조선 및 목포에 있던 일본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며 상업인의 자발적 모임이 아닌 행정기관, 나아가서는 외교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개항 이후 중개인 규칙을 만들어 중개인을 지정하고 환전하는 규칙을 만들었던 것, 가마니 판매소를 경영해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창고 등을 경영해서 상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현미, 면화, 해초, 마른정어리 등 주요 생산물의 검사법을 만들어 수출품의 개량을 꾀하고, 도량형기의 검사를 하고, 농산물 종자를 한국인에게 배포하여 종자의 개량을 꾀하고, 해운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그 항로의 발달에 이바지 하는 등은 행정기관의 사무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수차에 걸쳐 분쟁이 발생한 한국 일부의 동맹파업을 진정시키는 일을 하고 한국 관리와 담판하여 일본 상인의 이권을 옹호하는 것 등은 외교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업무는 당시 조선에서의 경성, 인천, 부산, 목포상업회의소의 특색이다.

타 지역에는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상업회의소의 창립이 활발한 점에 비하면 목포에서의 상업회의소는 일본인 중심이었다는 게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목포상업회의소는 당시 조선에 있던 4개 상업회의소의 연합인 ‘상업회의소연합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901년 재한국상업회의소 연합조직을 구상하고 1901년 7월 임시회를 열어 재한일본인상업회의소연합회를 조직해서 회의소의 임무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토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가결사안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상업회의소연합회’는 그 후 상업회의소가 발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된다.

표 1 1914년 현재 전국 조선인 상업회의소 현황

	의원수	특별의원수	회의횟수	의사건수	선거권자	선거권, 피선거권병유자	경비예산액	설립년월일
경성상업회의소	50	9	13	45	890	890	6,090	1905. 07. 17.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	24	2	4	7	150	50	971	1905. 07. 02.
개성상업회의소	40	6	3	14	100	60	900	1907. 10. 11.
수원상업회의소	23	4	9	13	60	40	1,380	1908. 04.
강화상업회의소	11		8	11	224	224	210	1910. 05. 01.
대구상무소	25	2	16	28	220	120	1,020	1907. 07. 16.
김천상업회의소	20		6	14	210	210	1,181	1906. 03. 06.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	20	5	11	34	114	56	1,569	1908. 08. 18.
평양상업회의소	18		20	50	300	200	465	1908. 03. 09.
삼화상업회의소	30	10	54	100	79	61	1,870	1908. 12. 01.

	의원수	특별의원수	회의횟수	의사건수	선거권자	선거권, 피선거권영유자	경비예산액	설립년월일
의주상업회의소	150	22	24	58	80	80	450	1911.03.15.
원산상업회의소	40		4	23	110	70	986	1900.08.17.
함흥상업회의소	30	10	32	56	100	50	542	1907.03.16.
복청상업회의소	40	8	17	17	85	85	150	1905.05.
	521	78	221	470	2,722	2,198	17,784	

자료:『통감부통계연보』 및 『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제3절 개항 직후 목포의 근대 기업

개항에 따라 외국 상인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기업 설립은 병합 이후 10년간 조선총독부가 조선은행, 식산은행 등 국책 은행을 설립하고 한국 내의 금융 실권을 장악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우선회사 등 거대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경제 분야를 지배하였다. 1919년 3·1운동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통치방침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화하면서 「회사령」이 폐지(1920)되어, 그 후 문화통치기인 1920년대에 기업 설립 붐이 일어났다. 토지조사사업 결과로 대지주가 출현했고 미곡의 대일 수출 증가는 자본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 교육 기관에서 훈련 받은 경영자, 기술자, 기능공이 많이 배출되어 근대 기업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일본은 한국을 병참기지화 하였으며 이때부터 일본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 전황이 불리하게 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민간 기업체를 국책 회사에 통합시켰다. 1940년 「경제통제령」, 1942년 「중소기업정리령」 등으로 한국의 민족계 기업은 위축되었고 대부분 몰락하였다.

1. 금융기관

일제 강점기 은행 정책의 큰 특징은, 특수 은행(금융조합 포함) 중심으로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조선인 은행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조선은행, 농공은행-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 등 특수 은행이 총독부 지원을 받으면서 예금·대출 등 일반 은행 업무까지 취급했다. 특수 은행이란 채산성 등의 문제 때문에 상업금융기관인 일반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자금 배분을 위해 정부 출자로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대출 전담 등 각종 국책 특수 은행이 있다.

1) 은행

우리나라에 근대적 은행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878년 6월 일본 동경에 본점을 둔 제일은행이다. 당시 부산에 들어섰는데 1880년 원산에 출장소를 개설한 데 이어, 1882년 12월에는 인천출장소를 개소하였고, 목포출장소는 1898년 10월에 개소하였는데 이것이 목포에 설치된 최초의 근대적 금융기관이다. 일본은 한국에서의 상권 확장을 위해서 진출의 전초기지인 개항 지역에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하는 금융기관의 설치가 절실하였던 것이다. 제일은행 목포출장소에서는 일반 은행업과 해관세의 수납 및 영사관우편국 등의 공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취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의 제일은행은 통상적인 은행 업무의 영역을 넘어서서 1902년 한국 정부 및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어 대금은매입, 제일은행권의 발행 업무를 행하였으며, 1904년에는 한국 정부와 국고금 전단 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관세업, 국고 업무를 취급하였다. 1905년에는 화폐 정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한국 화폐 정리 사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권의 무제한 통용을 공인받는 등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까지 도맡았다. 제일은행의 이와 같은 만행은 1909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일본 제일은행은 한국금융계를 지배함으로써 금융 면에서 한국의 식민지화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일국의 은행권 발행 특권을 외국의 일개 사립 은행에 맡길 수 없었으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통감부와 협의하여 1909년 7월 「한국은행조례」를 공포하고 중앙은행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 한국은행이 공창자본금 1천만 원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에 제일은행은 그때까지의 화폐발행액과 서울, 부산 2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과 출장소를 한국은행에 위탁함과 동시에 원래의 일반 은행의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도 1909년 11월 구 한국은행 목포출장소로 위임되었다. 그런데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 1911년 2월 「조선은행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구 한국은행 목포지점은 자연히 조선은행 목포지점으로 바뀌었다. 1906년 9월에는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제십팔은행이 목포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이 지점은 주식회사 나가사키저축은행 대리점 사무까지 겸하였다. 한편, 주로 농업 또는 농공업을 경영하는 한·일인이 주주가 되어 1906년 7월에 개점한 광주농공은행은 1914년 9월 목포지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광주농공은행이 1917년 조선식산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같은 해 광주농공은행 목포지점은 식산은행 목포지점이 되었다. 이 은행은 주로 농공자금의 합방과 상업 금융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목포항과 인근 시골과의 거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계 은행의 한국 상류에 자국을 받은 한국인들은 스스로 기운을 조성하여 1897년 2월 한성은행, 1899년 1월 대한천일은행, 1920년 8월 호남은행 등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적 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호남은행은 1920년 9월에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설치하였다. 제일은행 목포지점, 제십팔은행 목포지점, 광주농공은행 목포지점,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의 근대적 금융기관의 발달은 목포 지방 기관과 각종 산업 발달을 위한 개발 자금, 중소기업 자금 등의 각종 자금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 중

특기할만한 것은 미곡 거래에 의한 금융으로서 당시 현지에서의 판매 자금을 기증한다면 일천 수백만 원 내지 2천만 원의 유통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통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조면업이었다. 목포 조면 생산량은 전국 총 조면 생산량 6천만 근 중 그 과반수량인 3천만여 근에 달한 관계로 4백만 원 내지 5백만 원의 자금 유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거액 자금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23년 12월에 목포어음교환수가 발행되어 이를 조선은행 목포지점 내에 두었다. 교환되는 수표는 당좌수표, 보증수표, 송금수표 등이었고, 어음은 예금어음, 만기일 또는 일시기 환어음, 약속어음 등이었다. 그리고 증서로서는 배당금영수증, 관청의 지불명령, 공채·사채이찰의 종류가 교환되었다. 교환소 조합은행은 조선은행 목포지점과 당좌거래가 있는 식산은행 목포지점, 제집팔은행 목포지점, 호남은행 목포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으로 조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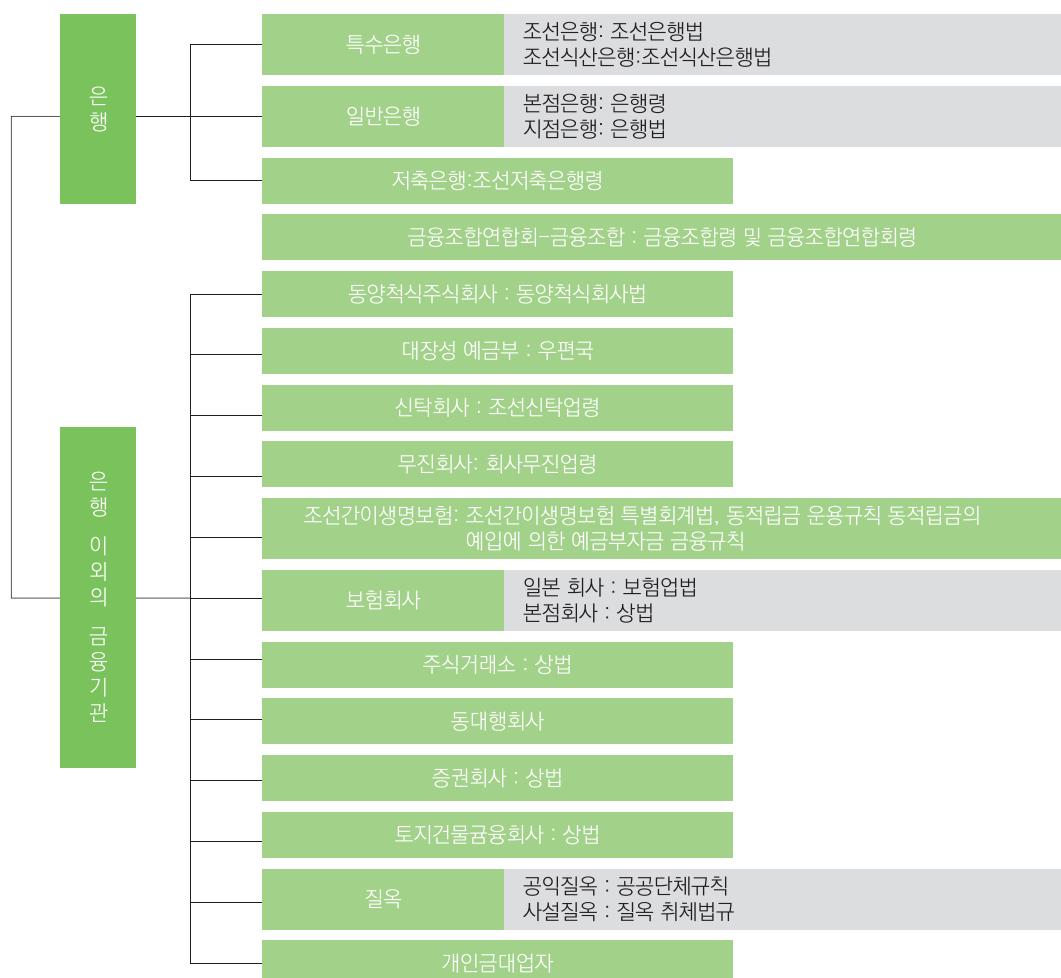


그림 1 조선의 금융기관

2) 호남은행

호남은행은 광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지주 자본과 상업 자본의 규합으로 창립, 발족된 순수한 민족계 은행이다. 설립 동기는 1908년 8월에 창립된 광주농공은행이 1918년에 조선식산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이유로는 3·1운동 이후 한국 민족주의가 그 운동방향을 교육과 경제 활동의 전개로 바꾼 데 힘입은 바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⁰⁷⁾ 호남의 '지역은행'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은행은 1920년 8월 문을 열었다. 이 당시 출자자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주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북 지역 지주도 일부 포함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31~1938년 호남은행 주주는 159~262명으로 대지주의 주식비중이 53~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광주에 본점, 목포에 지점을 두고 발족하였으나, 그 후 순천·장성·보성 등지에도 지점을 설치하였다. 1933년 7월 동래은행(東萊銀行)을 흡수, 합병하게 됨으로써 영업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동래·거창·영광·담양 등지까지 지점을 설치하게 되었고 자본금이 200만 원으로 증자되어 대은행으로 발전하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1908년 8월에 개점한 광주농공은행이 1918년 조선식산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같은 해 광주농공은행은 식산은행이 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호남은행이 설립되는데 본점이 광주에 있었지만 전남의 경제력이 목포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연 목포 중심의 자본이 은행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현기봉, 문재철, 김상섭, 김원희, 차남진 등이 대주주 14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주주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았다. 당시 목포 지역 상업 활동의 변화와 신흥 한국인 자본가 그룹의 등장이 타 지역에 비해 혁신성을 보여준 것이다. 본점이 광주에 있었으나 목포가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이다.

호남은행은 설립 후 조선인 중역-주주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견실한 운영을 통해 부실 채권 등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했다. 지역 평판이 좋아서인지 1933년에는 호남은행이 전라남도평의회에서 도금고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총독이 거부한 바도 있다. 1942년까지 경영도 안정적이었고 배당률은 매년 7~8%에 이르렀으며, 1920~1942년간에 자본금도 급증(공칭 150만 원 → 200만 원, 불입 37.5만 원 → 187.5만 원)한 데다 조선은행에 자금과 경영이 종속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는 1942년 2월 동일은행(東一銀行)에 합병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을 계기로 일제는 1928년에 「신은행령」을 발표했다. 민족계 금융기관에 대한 일본인 자본의 지배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식민지 금융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민족계 은행의 통합을 강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식민지 지배당국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 운영을 고수하자, 총독부는 일본인 자본의 참가를 거역하고 일본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일은행과의 통합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결국 1942년 4월 30일에 합병되었다.

07) 손정연, 『무송 현준호』, 전남매일신문사, 1977, 162쪽.

표 2 호남은행 대주주들의 관련 사업체

성명	사업체명	발기인 출신지	주식수
현준호	목포창고금융(주) 대표	목포	1,200
문재철	남일운수(주) 대표	목포	1,200
김상섭	전남신탁(주) 대표	목포	1,000
김성규	양성합명(주) 주주	목포	1,000
김원희	동아고무(주) 전무	목포	1,000
최종남	광주 대지주	광주	1,000
차남진	전남신탁(주) 전무	목포	690
지응현	광주 대지주	광주	810
박용현	강진 조합장	광주	880
박현경	화순광업소 대표	광주	880
오병남	화순 대지주	광주	600

3)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이 회사는 일반 「회사법」에 의거해 창립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제정, 공포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특수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는 이중 국적 회사로 창립된 것이다. 이 회사는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회사로서 영국이 인도에 설치한 동인도회사와 성격이 같다. 일본은 1912~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전국 토지의 4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본 소유가 된 토지를 운영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싼 가격으로 일본인과 친일 세력에게 팔아 넘겼다.

이 회사는 사업부와 영업부로 나누고, 특히 금융 부분의 기능에 대하여는 1920년 6월에 나주군 영산포에서 목포부로 신축 이전하였다. 그 후 10년 동안 각종 산업, 시가 택지 건물 신축에 각각 투자 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이것을 점차 확대하여 갔다. 그리고 1929년 7월 말 대출도 많았고 이밖에 총독부의 쌀 증산 계획에 따라 저금리로는 비료 대금 및 기타 약 50만 원을 대부했고, 정기, 당좌 등의 예금은 적었다고 한다. 목포지점 관내의 업무소는 나주군 영산포, 광주군 송죽리, 보성군 벌교, 보성, 강진군 강진읍, 함평군 문장리 등의 6개 주재소 및 광주군 광주읍 내, 순천군 순천읍 내의 2개 금융신청소가 설치되어 주재원 또는 정기출장사원이 있어서 자금 융통에 관한 상담을 했다.

대부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매입자금, 일반농사경영자금, 개간사업자금, 수리사업자금, 일반비료자금, 쌀 증산 계획에 따른 토지개량자금, 비료 농구 등의 저리자금, 농경지에 필요한 자금과 둘째, 임업, 잡업, 과수 등의 자금, 축산업의 자금, 수산업의 자금, 정미업, 양조업 및 기타 제공업 자금, 운

수와 교통업, 기타 제조업의 자금, 위생교화사업의 자금, 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금 등, 일반근업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어떤 류의 사업이든 경영이 확실한 것은 금융회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2. 목포의 기업 발전

목포 개항 이후 일본은 자본주의 체제가 확실해지고 공업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쌀이 부족하게 되고 쌀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식량 공급지로 만든다. 초창기 목포항의 무역이 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지역 지주층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목포 인근 지역에서 김성규(金星圭, 장성·무안), 문재칠(文在喆, 암태도), 차성술(車成述, 무안 용포리), 김상섭(金商燮, 무안·완도), 서인섭(徐寅燮, 무안), 정영철(鄭永轍), 현기봉(玄基奉, 영암) 등이 대지주로 성장한 것이 바로 목포 개항 직후였다는 것은 이를 말해 준다. 개항 직후 목포항의 공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지만, 상업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갔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지주와 상인층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물론 이는 민중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쌀의 수출은 당장 쌀값 양등을 가져와 도시빈민과 빈농층의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목포항 등 개항장의 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은 국내적으로 지주·상인층의 성장과 빈민층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을 진척시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목포항의 무역 구조는 한마디로 쌀과 콩을 수출하고 면포와 면사 등 면제품을 수입하는 이른바 미면 거래형(米綿去來型)의 것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대외 통상은 개항장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면교환의 종속적인 저개발형 통상 구조를 가지고, 주로 후발 일본 자본주의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연계되어 있었다.^{⑧)} 특히 1909년 이후 일본제 광복 등이 우세하게 되면서^{⑨)} 결국 목포항의 개항은 한국이 미면교환의 저개발형 통상 구조로써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연계되는 통로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포항의 개항은 한편에서는 국내에 지주층의 성장을 가져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을 진행시켰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제국이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저개발형 통상구조로써 더 강하게 종속되는 고리를 추가한 것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목포 공업의 중심은 조면, 방직, 직포로 구성된 섬유산업과 쌀 반출과 관련된 정미업이었다. 당시 일제가 남긴 가장 큰 사업적 유산은 면업관련 생산시설이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 개항 이후 1910년까지 목포항의 공업은 도정업(搗精業)·조면업(繅綿業) 두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인 양조

⑧) 김경태,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4, 338쪽.

⑨) 조선면사포상연합회, 『조선면업사』, 1929, 35~50쪽.

업·면실유 등이 발전한다. 이 외에서도 주물업·제과업·인쇄업 등도 활발했다.

1) 도정업 및 관련기업

당시 기무라정미소[木村精米所]는 목포의 가장 대표적인 정미소였으며, 이를 경영한 이들은 목포항의 가장 대표적인 일본 상공인들이었다.¹⁰⁾ 한편 소규모였지만 1929년경 조선인들 가운데 정미업에 종사한 이들로는 문재철, 김종기(金鍾沂), 김종태(金鍾泰), 우형규(禹亨圭), 김자율(金子律), 임종문(任鍾文), 송성식(宋成植), 김순도(金順道), 탁백규(卓栢奎), 신태학(辛泰學), 하은(許恩), 문두경(文斗京), 최춘오(崔春五), 김사규(金士奎), 주복동(朱福童), 김용준(金容俊) 등이 있었다.¹¹⁾ 이후 조선인 정미소도 여럿의 합자에 의해 그 규모가 커졌다. 1931년에는 김문옥(金文玉), 이요초(李瑤草), 장덕준(張德俊)의 합자에 의해 합자회사 대성상회(大成商會)가 자본금 2만 원으로 세워졌다. 또 1938년에는 임종문 등 임씨가에서 출자하여 자본금 1만 5천 원의 합명회사 호남정미소를 세웠다가 1939년에는 문재철과 일본인 앤도[遠藤役次], 그리고 몇몇 조선인들의 출자에 의해 자본금 19만 8천 원의 남선정미주식회사(南鮮精米株式會社)가 세워졌다.¹²⁾

식료품공업은 한국의 풍부한 원료와 싼 임금을 기반으로 일본에 대한 식료 공급을 위해 일찍부터 발달했다. 일제 강점기 생산 공장 수와 고용 인원 등의 측면에서 공업구성상 양적인 비중이 커거나 생산 방식과 경영 규모의 측면에서는 영세하고 전근대성이 온존했다. 공장의 90%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고 대공장은 1%에 불과하였다. 균량미 공급에 급급하던 일제는 1941년부터 원료를 목포에 집중시켜 천일정미소를 위시하여 시내 9개 식량 영단 공장에서 집중 반출하였다.

이러한 목포의 쌀은 주조미(酒造米)로 손색이 없어서 목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광주, 영암, 영광, 나주, 여수, 송정리, 장성, 담양 등에서 양조업자가 경쟁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1920년대 말 목포의 일본주 제조업자로는 림주조장, 목포주조주식회사, 중야주조장, 송영양조소, 다미야주조 등이 있었다. 목포의 조선주 제조업자는 1920년대 초만 해도 50여 호가 있었으나, 다수가 도태되고 1929년경에는 1회사, 5개인으로 정리되었다. 5개인은 남교동의 조찬경(趙贊卿), 대성동의 방약서아(方約西亞), 북교동 마에다이크, 서정의 강영숙(姜永淑), 앵정의 최준원(崔俊元) 등이었다. 회사로는 1929년 창립된 목포양주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사장은 김상섭, 전무취체역은 차남진, 자본금은 10만 원이었고, 1년 간 생산액은 탁주가 4천 석, 약주 1백 석, 소주 3백 석이었다. 당시 목포부 내의 탁주 소비량은 약 7,500석

10) 목포부, 『목포부사』, 1930, 639~640쪽.

11) 전남도사정지간행회, 『전남사정지』 상, 1930, 423쪽.

12)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경제신문사, 1931.

이었는데, 그 가운데 반 이상을 목포양주에서 공급하고 있었다. 소주의 소비량은 상당하여 당시 일본과 조선 내 각지에서 목포부 내에서 생산하는 양을 합하면 약 1만 석이었다. 이 가운데 목포부 내에서 소비되는 것은 2할 정도였고, 나머지 8할은 타지로 반출되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은 조선 소주였다.

목포부 내의 최대 소주 생산자는 전남소주주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1922년 3월 일본인이 설립한 것으로 약 1천 석의 일본 소주를 생산하였다. 조선 소주는 목포양주주식회사와 전남소주주식회사 등에 의해 주조되었다.

2) 조면업, 방직업 및 관련 기업

방직공업은 1930년대 초반, 민주사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농촌의 전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반적이었던 시기에 일본방직공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식된 방직공업이 목포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목포에서 조면업은 1906년에 면화의 재배 및 면화와 조면(繰棉, 씨를 뺀 면화) 수출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면업주식회사(韓國棉業株式會社)가 창립된 것을 그 효시로 한다. 이 회사는 당시 오사카에 본사를, 목포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당시 이 회사의 조면기의 수는 30대였다. 이 회사는 1910년 이름을 조선면업으로 바꾸었다. 한국면업이 설립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천평면업(天平棉業)주식회사가 세워졌고, 1913년 1월에는 목포부의 면화 중매업자들이 만든 목포면업주식회사가 세워졌다. 이들 세 회사는 당시 면화 매수를 독점하고 있었다. 뒤에 조선면업은 오사카에 있던 일본면화주식회사에 포괄되어 그 목포 지점으로 되었다. 1918년 7월에는 천평면업 및 목포면업과 함께 3자를 합병하여 조선면화주식회사로 이름을 고치고 자본금을 2백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소유공장은 목포·영산포·남평·광주·여수·부산·마산 등 12개소를 두고, 조면기는 380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각지에 분산된 조면공장은 오히려 불편을 가져와 다른 곳의 공장을 점차 폐쇄하고, 목포에 집중하여 목포부 해안통에 조면기 200대를 갖춘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1918년에는 미쓰이물산[三井物産]주식회사가 목포에 조면기 50대의 조면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1919년 3월에 이르러 자본금 1백만 원의 남북면업주식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 경영권을 남북면업으로 넘기게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공장을 확장하여 1930년에는 약 117대의 조면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 밖에 1922년 이후 개인 경영의 조면공장이 속출하여 1928년 현재 약 30여 개소의 개인 소유 조면공장이 있었고, 이들이 갖춘 조면기는 302대에 달하였다. 1919년 기준 우리나라에 자본규모 1백만 원 이상의 기업은 목포의 ‘남북면업’, 신의주의 ‘선만염사’ 그리고 서울의 ‘조선생사’ 등 일본인 기업 3개에 불과했다. 이 시기 조선인 기업으로 경성방직이 자본금 1백만 원으로 경쟁에 뛰어 들었다.

1920년대 말 조선인 가운데 조면업에 종사한 이로는 죽동의 서계행(徐桂行), 류정의 권영례(權寧禮)가 있었다.

1924년에는 해안통에 조선면화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직포공장이 설립되어 원료면사는 오사카에서 수입하였으나 그 당시 설치 직기 대수 128대로서 16피트 및 14피트 두 종류로 만들었다. 그 후 제품의 정선과 판로의 확장에 주력한 결과 한국 내 각 시장에서 품질이 인정되어 매출이 점차 증가하여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상태가 되자 1927년경에는 158대를 운전조업하고 팔괘표조포는 각지의 시장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1918년 해안통에 자본금 50만 원으로 한국에서 유일한 회사인 조선제유(주)가 설립된 이래 한국 내 조면업자가 종전에 수출한 면실은 목포의 이 회사에서 소화, 정제되어 면실유[食用白絞油]로서 일본 및 조선 내 각지의 주방에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6년 일화제유회사에 합병되어 일화제유(주) 목포공장의 명칭 아래 조업을 계속하였다.

3) 기타 기업

전기업으로 목포전등주식회사(木浦電燈株式會社)는 복산정에 있었다. 1911년 12월 창립, 1913년 2월에 개업하여 발전소는 앵정에 소재했다. 1929년 말에 점등 총 수 15,375등, 수용가 수 4,051호, 동력 사용 마력 수 566마력, 사용가 수 75호, 지역은 목포시가 외 함평, 학교, 의음까지 미치고 발전기는 창립 당시의 94KVA 1대, 기타 증설로 인하여 270KVA 1대(유니프로-엔진) 625KVA 1대(B.B.C사제 터-빈), 합계 3대를 배치하고 신·구 합하여 1,009KVA의 출력을 갖게 되었다.

조선업은 지역의 위치상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었다. 근대식 조선은 개항 후 10년만에야 겨우 소조선소가 1907년 항정 잔교 부근에서 개업하였다. 앵정 어시장 서쪽의 조선소를 매수하여 동소에 이전, 1912년에 다시 온금동 경계인 육정(旭町) 현 위치에 이전하여 운영 중인 태전조선소(太田造船所)가 목포 근대 조선업계의 시작이다. 이 밖에 1912년 대야조선소, 같은 해에 개업한 하합조선소, 출상조선소, 송영조선소 등이 있었다. 당시 수탁 건조한 것은 대개 5, 6t급의 최소형으로 연안도서 주항로에 사용되었다. 1916~1917년에 걸쳐 경비선의 건조를 경험하고 그 후 매년 발달하여 1925년경에는 150t급의 제작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국형 어선은 종래 각지에 소위 선조 목수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 가내공업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고무는 타이어, 고무신, 완구 등에 사용되며 조선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목포에서 고무업은 1924년 육정에 목포고무공업소, 대정동에 금강고무공업소가 개설되고 2016년에 남교동에 동아고무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회사는 자본금 30만 원 규모의 회사로 140마력 증기발동기를 비치하여 약 200명의 종업원, 연 40만 켤레의 고무신을 생산했다.

철 및 철제품을 생산하는 철물공장은 1905년 무렵 온금동에서 개업한 안국환(安國煥)을 그 원조로 한

다. 1924년 무렵에는 남교동에 목포주조주식회사 등 몇 개의 소형 주조회사가 설립되어 솔, 농기구, 온동, 화로 등에 필요한 철제품을 생산하였다. 기계 기구 공업 분야 역시 일제 강점기 일본 공업 발전의 부속물로 유지되어 거의 일본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목포에서는 2, 3개소의 한국인 기업체가 있었는데 일본인 하청공장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나마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인 기업체(목포조선철공)를 강제 병합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인기업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천기업주식회사의 전신인 백천철공소만이 목포 조선철공주식회사 지정공장으로서 한인 기업체의 명맥을 유지하였을 뿐이다.

선박 기관 수리업체로 박창준에 의해 세워진 목포조선철공주식회사가 1925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었다.

개항 후 최초의 제과점은 무안통의 인도옥이고, 그 다음은 1899년 개업한 영정의 유해상점이다. 수정과 본정 등에 1910년대 개업한 제과점이 있었다. 카스텔라, 양갱 등의 제품은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인쇄업은 1899년 본정에 목포활쇄소가 창립되었는데 이 회사는 전남인쇄주식회사의 전신으로 목포의 인쇄업으로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 활쇄소는 1907년 8월에 조직을 변경하여 목포인쇄주식회사가 되고 1919년 5만 원으로 증자하여 광주일보를 매수함과 동시에 다시 그 명칭을 개칭하여 전남인쇄주식회사라 칭했다. 이 회사는 1923년 아래 신문발행에 주력하였다. 그 외 목산인쇄소가 있었으며, 한국인이 경영한 곳으로는 1924년 상반정의 광선인쇄소 및 1929년의 호남인쇄소 등이 있었다.

제빙사업은 목포와 같은 어항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냉동용 얼음의 수요가 적지 않아 1922년에 해안통에 평강제빙소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924년 석천제빙소가 운영을 시작했고 목포제빙냉장주식회사는 1929년 1월부터 운영되었다. 목포제빙냉장주식회사의 경우 52마력의 전동기를 장치하여 1일 10t, 연 300t의 제조 능력이 있었다.

목재사업은 당시 국내에 목포, 부산, 군산의 3항에 제재공장이 있었는데 1923년 앵정의 하합조선소에 10마력, 다음해 5월에 축정의 남선재목점에 7마력의 전동기를 설치하여 연간 150만 재의 생산이 있었다고 한다. 생산된 목재의 반은 지방 및 연안도서에서 나머지 반은 호남선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었다. 원목은 주로 화태, 연해주 및 두만강유역에서 산출되는 목재이며, 또 미국재의 수입도 있었다. 선박으로서 수송되며 홍송, 삼송, 적송, 미송, 미삼 등이 많았다.

도자기업체로는 1942년 5월 설립된 행남사가 있다. 김창훈에 의해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운영 중인 목포의 대표업체가 되었다.

4) 교통 및 운수기업

육상 교통의 경우 1921년 목포자동차가 영업을 시작한 것이 목포에서의 최초의 육상교통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25년 조일자동차부가 생겨 경쟁 체제에 들어간 이후 1926년 공진회가 개설되면서 택시제도

가 생겼다 볼 수 있다. 이러한 택시 영업은 목포-광주 간의 매일 2회 정기노선까지 운영되었으나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1930년대에 목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약 14대로 대부분 영업 활동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상 운송의 경우 목포항운합명회사가 일본인들에 의해 1909년 8월에 창립, 자본금 20만 원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1912년 5월 각지의 경영자가 합동하여 조선우선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본점을 경성에 두고 목포출장소는 항로를 확장해 왔는데 그 후 1920년대 경기 회복과 함께 목포해운회사를 비롯한 여러 민간 운수회사가 생겼다. 이 시기인 1924년 부산에 조선기선주식회사가 창립되어 목포해운회사와 나란히 목포-여수 간의 하객 수송을 하게 되었고 1926년 항로를 부산까지 연장하였다. 1929년 2월 조선기선이 목포해운을 매수하여 항로 및 연안선 관계 운수사업을 계속해 나갔다. 한편 1929년 7월 국제운수주식회사 목포지점이 개설되고 같은 시기 남일운수주식회사, 다도항운사, 진도운수주식회사, 목포해운주식회사, 영암운수창고주식회사, 해남운수주식회사, 목포항운합명회사 등이 연안 운수사업에 뛰어 들었다.

5) 임업, 어업 등 기타 산업

우리의 산업 경제 활동은 일제가 설립한 금융조합, 농공은행 등을 통해 통제되었다. 어업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찍부터 한국 해안에 침입하여 우리 어민보다 우수한 선박과 기구로써 많은 어획고를 올리던 일본 어민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후원 하에 우리 어장을 독점하였다. 총독부는 「어업령」을 공포하여 일본 어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어민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일본의 어획고가 한때 세계 제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주요 어장을 독점 지배하였기 때문이었다.

임업 부문에서도 「산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임야가 거의 대부분 일본인에게 넘어가 전체 임야의 50% 이상이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